

2013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2013. 12. 18.

경기도교육청

2013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2013. 12. 18.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3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2013. 12. 18.



제 출 문

경기도교육감 귀하

이 보고서를 2013년도 연구 용역 사업 「2013년 경기도 학생 인권
실태 조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12. 18.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김형완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형 완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자 박 근 덕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평화인권센터 부센터장)

김 태 우 (국회사무처)

보 조 원 강 미 선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자 문 위 원 신 준 섭 (해오름초등학교, 면접연구 참여)

조 성 범 (군포 수리고등학교)

임 정 훈 (평택 효명중학교)

한 지 혜 (인권교육센터 온다)

오 동 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요 약

1. 실태조사 진행 전반

이번 2013년 경기도학생인권 실태조사는 온라인 설문과 집단면접조사 두 가지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설문은 2012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경기도 내 초등학교 124개교, 중학교 121개교,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포함) 124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학생의 경우 각 학교별로 한 학급만 지정해 참여토록 하였으며,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학생 총 12,404명, 교사 4,022명, 학부모 3,844명이 응답하였다. 한편 집단면접조사는 3개 권역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도시형과 농어촌형을 교차 분류하여 6개 학교에서 각각 학생 10명 내외, 학부모 10명 내외, 교사 5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경기도내 학생인권 증진의 추세를 살피고, 집단면접조사를 통하여는 온라인 설문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각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상황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경기도내 학생인권의 향상 추세 및 안정화

「2013년 경기도 학교인권 실태조사」 연구 결과 여타 지역대비 전체적으로 학생인권의 향상과 안정화 추세를 읽을 수 있었다. 즉 그동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체벌, 두발 단속, 휴대폰 소지 금지 등의 문제를 타 지역보다 한발 앞서 해소하였으며, 인권문화의 기본적 토대를 구성하고 있다. 다만 학생자치와 인권교육의 부분에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학생인권 질적 향상 추진

경기도내 이러한 학생인권 증진 추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학생인권이 두발 길이 단속에 한정되어 있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학교공동체의 합의를 통하여 용모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민주적 절차(학생자치) 훈련과 더불어 학생인권의 외연 확장 등의 방안을 실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교사의 권리 증진을 통한 학생인권 신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이번 조사에서는 교내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 행정 업무 과다 등으로 인하여 교사들의 느끼는 직무피로도와 이것이 학교 현장의 학생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직무피로도와 학교 내 학생인권 보장 수준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교사는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의 또 다른 주요 주체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학교 학교행정 업무 경감과 담당 학생 수 조절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 민주화 등을 통하여 학생인권 증진에 교사역량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사 업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

5. 통합적인 인권교육의 실시

위와 같은 학생인권 증진의 지속가능한 구조를 위하여 한편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통합적인 인권교육이다. 유네스코 협동학교의 인권친화학교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인권교육도 ① 포용, 참여, 교육자와 교육대상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적 방법을 통하여 ② 인권의 개념, 원리,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가치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고 ③ 일상에서의 인권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장 개요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1
3. 연구 방법	25
4. 연구의 기대효과	27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29
제 2 장 설문조사 결과 기초분석	33
제1절 온라인 설문조사 개요	33
제2절 학생 설문조사 결과분석	34
1.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이해	34
2. 학교생활	36
3. 학교 폭력 등	44
4. 학생자치	50
5. 징계 절차	53
6. 인권교육	54
7. 총평	55
제3절 교사 설문조사 결과분석	60
1.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이해	60
2. 학교생활	62
3. 교사참여 등과 직무피로도	70
4. 학교폭력 등	72
5. 학생자치	75
6. 학생지도	78
7. 인권교육	80

8. 총평	83
제4절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분석	86
1.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이해	86
2. 학교생활	88
3. 학교폭력 등	94
4. 학생자치	99
5. 학생지도	102
6. 인권교육	104
7. 총평	106
제 3 장 집단면접조사 결과 기초분석	111
제1절 집단면접조사 개요	111
제2절 집단면접조사 결과 기초분석	112
1.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이해	112
2. 소지품 검사, 두발 단속 등 학교생활 일반	112
3. 학교폭력	113
4. 체벌 및 상벌점제	118
5. 학생자치	121
6. 인권교육 등 기타	122
7. 맷으며	123
제 4 장 심층분석	127
제1절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이해	127
제2절 차별	133
제3절 자유권 부분에서의 학생인권	137
제4절 학생자치	144
제5절 체벌 등	148
제6절 인권교육	155
제7절 교사 직무피로도에 대한 관계분석	160

표 록 차

제 5 장 국내외 주요 학생인권제도	169
제1절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국내제도	169
제2절 해외 제도 소개	178

제 6 장 시사점 및 제안	187
1. 경기도내 학생인권 신장	187
2. 학생인권의 질적 향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 > 학생인권 2기	188
3. 통합적 교육 시스템으로서의 인권교육	190
4. 학생인권실태조사 방법에서의 제안	195
부록 I. 학생인권 전국대비	199
부록II. 학생인권 건의사항 요약정리	205
부록III. 온라인 설문지	211
1. 학생용	211
2. 교사용	217
3. 학부모용	223

<표 I -1> 조례제정을 통한 학교 인권 향상에 대한 이해도 변화 추이	19
<표 I -2> 조례시행 이후 학교에서 학생인권보장 강화에 대한 인식(2012년도)	20
<표 II -1> 온라인 설문 참여자 현황	33
<표 II -2> 학생인권조례 인지 여부(학생)	34
<표 II -3> 학교생활인권규정 인지 여부(학생)	34
<표 II -4>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학생)	35
<표 II -5> 학교생활인권규정 내용 평가(학생)	35
<표 II -6> 차별 존재 여부(학생)	36
<표 II -7> 학습권 보장 여부(학생)	37
<표 II -8> 학습 선택권 보장 여부(학생)	37
<표 II -9> 두발길이 규제 여부(학생)	38
<표 II -10> 소지품 검사 여부(학생)	38
<표 II -11> 휴대전화 소지 규제 여부(학생)	39
<표 II -12> 언론활동 및 표현의 자유 보장 여부(학생)	39
<표 II -13> 상담실 및 상담교사 여부(학생)	40
<표 II -14> 방과 후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 여부(학생)	41
<표 II -15> 급식 위생 여부(학생)	41
<표 II -16> 급식 개선 시 학생 의견 반영 여부(학생)	42
<표 II -17> 보건실 이용 가능 여부(학생)	42
<표 II -18> 소수 학생 권리 보장 여부(학생)	43
<표 II -19> 학생인권옹호관 인지 여부(학생)	43
<표 II -20>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여부	44
<표 II -21> 언어폭력 피해 경험 여부	45
<표 II -22> 학교폭력 목격 경험 여부	45
<표 II -23> 체벌 존재 여부(학생)	46
<표 II -24> 체벌 유형(학생)	46
<표 II -25> 교사 언어폭력 존재 여부(학생)	47
<표 II -26> 교사 언어폭력 빈도(학생)	47
<표 II -27> 학원강사 폭력 존재 여부(학생)	48

<표 II-28> 학원강사 폭력 빈도(학생)	48
<표 II-29> 가정폭력 존재 여부(학생)	49
<표 II-30> 가정폭력 빈도(학부모)	49
<표 II-31> 학생 자치활동 장려 여부(학생)	50
<표 II-32> 학생회 공간 여부(학생)	50
<표 II-33> 정기 학생회 여부(학생)	51
<표 II-34> 학생 대표 자격제한 여부(학생)	51
<표 II-35> 학생회 의견 반영 여부(학생)	52
<표 II-36> 학생회 주관 행사 여부(학생)	52
<표 II-37> 징계 이유 고지 여부(학생)	53
<표 II-38> 징계 시 의견진술권 보장 여부(학생)	53
<표 II-39> 인권교육 실시 여부(학생)	54
<표 II-40> 인권교육 유형(학생)	54
<표 II-41> 인권교육 영향 평가(학생)	55
<표 II-42> 학생인권조례 인지 여부(교사)	60
<표 II-43> 학교생활인권규정 인지 여부(교사)	60
<표 II-44>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교사)	61
<표 II-45> 학교생활인권규정 내용 평가(교사)	61
<표 II-46> 차별 존재 여부(교사)	62
<표 II-47> 학습권 보장 여부(교사)	63
<표 II-48> 소수 학생 권리 보장 여부(교사)	63
<표 II-49> 학습 선택권 보장 여부(교사)	64
<표 II-50> 두발길이 규제 여부(교사)	64
<표 II-51> 소지품 검사 여부(교사)	65
<표 II-52> 휴대전화 소지 규제 여부(교사)	65
<표 II-53> 언론활동 및 표현의 자유 보장 여부(교사)	66
<표 II-54> 상담실 및 상담교사 여부(교사)	67
<표 II-55> 방과 후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 여부(교사)	67
<표 II-56> 문화 프로그램 개최 여부	68
<표 II-57> 급식 위생 여부(교사)	68
<표 II-58> 급식 개선 시 학생 의견 반영 여부(교사)	69
<표 II-59> 보건실 이용 가능 여부(교사)	69
<표 II-60> 교사 의견 반영 여부	70
<표 II-61> 교사 주체성 존중 여부	70
<표 II-62> 학교 운영 교사 참여 여부	71
<표 II-63> 교사 직무피로도	71

<표 II-64> 학생간 신체적 폭력 발생 여부(교사)	72
<표 II-65> 학생간 언어폭력 발생 여부(교사)	72
<표 II-66> 학생간 기합 등 폭력 발생 여부(교사)	73
<표 II-67> 체벌 존재 여부(교사)	73
<표 II-68> 체벌 유형(교사)	74
<표 II-69> 교사간 언어폭력 존재 여부	74
<표 II-70> 교사간 언어폭력 빈도	75
<표 II-71> 학생 자치활동 장려 여부(교사)	75
<표 II-72> 학생회 공간 여부(교사)	76
<표 II-73> 정기 학생회 여부(교사)	76
<표 II-74> 학생 대표 자격제한 여부(교사)	77
<표 II-75> 학생회 의견 반영 여부(교사)	77
<표 II-76> 학생회 주관 행사 여부(교사)	78
<표 II-77> 징계 이유 고지 여부(교사)	79
<표 II-78> 징계 시 의견진술권 보장 여부(교사)	79
<표 II-79> 인권교육 실시 여부(교사)	80
<표 II-80> 학부모 인권교육 여부(교사)	80
<표 II-81> 학생인권 교사 연수 여부	81
<표 II-82> 인권교육 유형(교사)	81
<표 II-83> 인권교육 영향 평가(교사)	82
<표 II-84> 학생인권옹호관제도 인지 여부(교사)	82
<표 II-85> 학생인권조례 인지 여부(학부모)	86
<표 II-86> 학교생활인권규정 인지 여부(학부모)	86
<표 II-87>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학부모)	87
<표 II-88> 학교생활인권규정 내용 평가(학부모)	87
<표 II-89> 차별 존재 여부(학부모)	88
<표 II-90> 학습권 보장 여부(학부모)	88
<표 II-91> 학습 선택권 보장 여부(학부모)	89
<표 II-92> 두발길이 규제 여부(학부모)	89
<표 II-93> 소지품 검사 여부(학부모)	90
<표 II-94> 휴대전화 소지 규제 여부(학부모)	90
<표 II-95> 학생 성적 부담감(학부모)	91
<표 II-96> 상담실 및 상담교사 여부(학부모)	91
<표 II-97> 방과 후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 여부(학부모)	92
<표 II-98> 급식 위생 여부(학부모)	92
<표 II-99> 급식 개선 시 학생 의견 반영 여부(학부모)	93

<표 II-100> 보건실 이용 가능 여부(학부모)	93
<표 II-101>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여부(학부모)	94
<표 II-102> 언어폭력 피해 경험 여부(학부모)	94
<표 II-103> 학교폭력 존재 여부(학부모)	95
<표 II-104> 체벌 존재 여부(학부모)	95
<표 II-105> 체벌 유형(학부모)	96
<표 II-106> 교사 언어폭력 존재 여부(학부모)	96
<표 II-107> 교사 언어폭력 빈도(학부모)	97
<표 II-108> 학원강사 폭력 존재 여부(학부모)	97
<표 II-109> 학원강사 폭력 빈도(학부모)	98
<표 II-110> 가정폭력 존재 여부(학부모)	98
<표 II-111> 가정폭력 빈도(학부모)	99
<표 II-112> 학생 자치활동 장려 여부(학부모)	99
<표 II-113> 학생회 공간 여부(학부모)	100
<표 II-114> 정기 학생회 여부(학부모)	100
<표 II-115> 학생 대표 자격제한 여부(학부모)	101
<표 II-116> 학생회 의견 반영 여부(학부모)	101
<표 II-117> 학생회 주관 행사 여부(학부모)	102
<표 II-118> 징계 이유 고지 여부(학부모)	102
<표 II-119> 징계 시 의견진술권 보장 여부(학부모)	103
<표 II-120> 소수 학생 권리 보장 여부(학부모)	103
<표 II-121> 학생인권옹호관 인지 여부(학부모)	104
<표 II-122> 보호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학부모)	104
<표 II-123> 인권교육 유형(학부모)	105
<표 II-124> 인권교육 영향 평가(학부모)	105
<표 III-1> 집단면접조사 대상	111
<표 IV-1> 학생의 학생인권조례의 인식에 대한 답변에 대한 연도별 변화	128
<표 IV-2> 교사/학생의 학생인권조례 인식 변화 추이	128
<표 IV-3>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학생)	129
<표 IV-4>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학부모)	130
<표 IV-5> 학생별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	130
<표 IV-6> 학부모별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	130
<표 IV-7>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교사)	130
<표 IV-8>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	131
<표 IV-9> 조례의 인권보장성과 교사피로도의 관계	131
<표 IV-10> 조례 및 규정 관련 교사 인식 수준 조사	131

<표 IV-11> 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 평가(지역별)	132
<표 IV-12> 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 평가(규모별, 균무년도별)	132
<표 IV-13> 차별 존재 여부(그룹별)	134
<표 IV-14> 차별 존재 여부(학교급별)	135
<표 IV-15> 하루 평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TV 시청 제외)(학생)	135
<표 IV-16> 하루 평균 가장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TV 시청 제외)(학부모)	135
<표 IV-17> 학교 내 차별 존재 여부(경기도/전국)	136
<표 IV-18> 소수 학생 권리 보장 여부(그룹별)	136
<표 IV-19> 학습권 보장 여부(그룹별)	137
<표 IV-20> 두발 길이 단속 여부(경기도/전국)	139
<표 IV-21> 소지품 검사 여부(그룹별)	140
<표 IV-22> 소지품 검사 여부(전체/특목고)	141
<표 IV-23> 휴대전화 소지 규제 여부(2012/2013)	142
<표 IV-24> 휴대전화 소지 규제 여부(그룹별)	142
<표 IV-25> 언론활동 및 표현의 자유 보장 여부(학생/교사)	144
<표 IV-26> 학생 자치활동 권장 여부(그룹별)	146
<표 IV-27> 학생회 공간 여부(그룹별)	146
<표 IV-28> 정기 학생회 여부(그룹별)	146
<표 IV-29> 학생 대표 자격제한 여부(그룹별)	146
<표 IV-30> 학생회 의견 반영 여부(그룹별)	146
<표 IV-31> 학생회 주관 행사 여부(그룹별)	147
<표 IV-32> 체벌 존재 여부(그룹별)	149
<표 IV-33> 체벌 존재 여부(연도별)	149
<표 IV-34> 체벌관련 학생인권 향상 추이	149
<표 IV-35> 체벌 경험 여부(경기도/전국)	150
<표 IV-36> 체벌 유형(그룹별)	150
<표 IV-37> 교사 언어폭력 존재 여부(연도별)	151
<표 IV-38> 교사 언어폭력 존재 여부(그룹별)	152
<표 IV-39> 교사 언어폭력 존재 여부(경기도/전국)	152
<표 IV-40> 학원강사 폭력 존재 여부 및 빈도(학생/학부모)	152
<표 IV-41> 학원강사 폭력 존재 여부(학교급별)	153
<표 IV-42> 가정폭력 존재 여부 및 빈도(학생/학부모)	154
<표 IV-43> 가정폭력 존재 여부(학교급별)	154
<표 IV-44> 인권교육 시행 여부 및 유형(그룹별)	156
<표 IV-45> 인권교육 유형(연도별)	156
<표 IV-46> 인권교육 영향 평가(학생/교사)	157

<표 IV-47> 인권교육 영향 평가(연도별/그룹별)	157
<표 IV-48> 학부모 인권교육 시행 여부 및 유형(교사/학부모).....	158
<표 IV-49> 학부모 인권교육 영향 평가.....	158
<표 IV-50> 교사 인권연수 실시 여부.....	159
<표 IV-51> 학생인권옹호관제도 인지 여부(그룹별).....	160
<표 IV-52> 교사 피로도에 의한 학생인권 확산 효과.....	161
<표 IV-53> 조례 영향 평가와 교사 직무피로도 상관관계.....	162
<표 IV-54> 학교장의 교사 의견 경청도와 직무피로도	162
<표 IV-55> 교사의 학생인권주체성 보장과 직무피로도.....	162
<표 IV-56> 교사의 체벌과 직무피로도 상관관계	163
<표 IV-57> 교사의 언어폭력과 직무피로도 상관관계.....	163
<표 IV-58> 교사의 직무피로도에 대한 교차 분석.....	163
<표 IV-59> 학생 100명당 교원 수.....	165
<표 V-1> 미국 LA 인권교육 관련 조사 결과.....	179
<표 VI-1> 인권감수성 구성요소	196

<그림 IV-1> 직무피로도에 의한 학생인권 확산 효과	164
<그림 VI-1> 학생 인권의 확산 과정	190
<그림 VI-2> 평화인권교육의 개념	193
<그림 VI-3> 평화인권교육의 목표	194
<그림 VI-4> 평화인권학교 프로그램 구성(예)	195

제 1 장 개 요

제 1 장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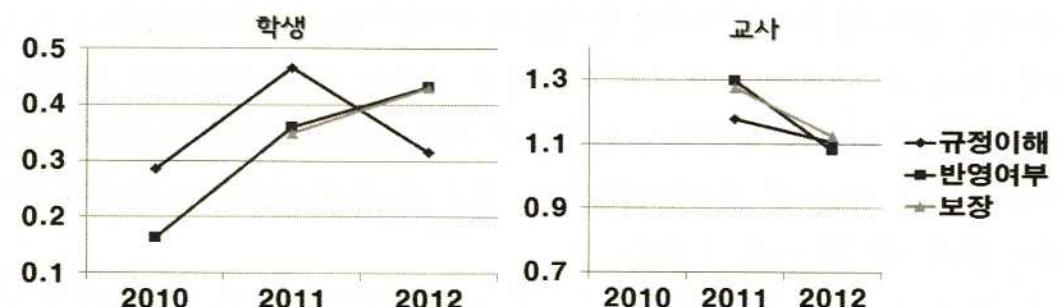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한 학생인권실태조사 필요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 활동의 질적·양적 확산을 위해서는 학교 내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영향성 평가를 통해 학교 내 인권문화 정착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다양한 구성원들의 인식 차이와 그 원인,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상호연관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학생인권의 향상을 위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야 함.

특히 '2013년 학생인권 실태조사'의 경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3주년을 맞아, 그간의 학생인권 실태의 추이를 통해 학생인권향상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점임.

<표 I-1> 조례제정을 통한 학교 인권 향상에 대한 이해도 변화 추이



<표 1-2> 조례시행 이후 학교에서 학생인권보장 강화에 대한 인식(2012년도)

학교급별	(단위 :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초등학교	31.56	32.31	30.88	3.43	1.82
중학교	13.55	25.78	46.38	9.47	4.82
일반 고교	10.55	28.06	45.59	11.12	4.69
특성화 고교	11.29	23.68	46.67	11.64	6.72
평균	16.74	27.46	42.38	8.91	4.51

* 경기도교육청, 「2012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2013.2.), 36쪽

- 그 동안의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조례시행에 따른 학생인권보장'의 경우, <표 1> 및 <표 2>처럼 학생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그 확산 추이는 누그러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교사들의 반응은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현 시점에서 이러한 분리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 향후 경기도 학생인권교육에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본 연구는 먼저 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현장에 어떻게,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이에 따른 구체적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학생인권향상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학교 각 주체들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주요 조항들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준과 관련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 국내 기준들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여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교육청의 중요정책과 연계한 실효성 확보 필요

-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혁신교육'의 6대 중점 정책의 하나로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 9. 경기평화교육현장을 선

포하고 2012. 6.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평화교육 MOU를 체결, '평화교육으로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에 양 기관이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함.¹⁾ 이는 경기학생인권조례의 안정된 시행 및 정착과 크게 맞물려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일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특히 이와 관련한 학생자치, 평화인권교육 영역에 대하여 집중적인 설문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단계적·연차적 정책을 제안, 그간의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학생인권과 교권²⁾과의 상생의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조례를 대항 관계로 설정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회의적으로 접근하는 시각들이 있으며, 이는 적지 않게 학생인권조례의 안정된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학교에서 진정한 인권보장과 평화구조 속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생의 관계에 있음을 연구하고자 함.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의 목적

- 보편적 인권기준에 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 인권친화적 학교 모델 제시
- 민주시민 육성 및 평화인권교육 정책과 연계한 단계별, 연차적 정책 제안

- 1) 유네스코 협동학교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확립하고 양질의 교육을 위한 시범 및 실험적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 및 인권의 가치를 가르치는 국제네트워크로 1953년 시작한 이래 현재 전 세계 180개국 9천여 개의 학교가 활동하고 있다. 범지구적 문제와 유엔 시스템, 지속가능발전교육, 평화와 인권, 문화 간 학습 등을 주요 학습 주제로 한다(경기도교육청 2012.6.7. 보도자료 참조).
- 2) '교권'의 의미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권의 의미가 교사의 권위의 의미로 오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본 연구에서 '교권'은 인권적 관점에서의 진정한 교사 자신들의 권리의 염두에 두고 사용함.

연구의 내용

- 학생인권 실태 전반에 대한 교육주체별·영역별 조사 및 분석
- 학생참여자치 및 평화인권교육 부분에 대한 집중조사 및 정책 제안
- 주요 사안과 관련한 국제 및 국내 기준의 분석
- ‘2013 경기학생생활 인권교육 기본계획’ 및 ‘2013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 인권친화적 학교 모델 제시

□ 학생인권 실태 전반에 대한 교육주체별·영역별 조사 및 분석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제2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의 구체적인 인권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례는 제3장에서 학생 인권의 진흥과 관련하여 인권교육 등 인권보장 환경을 위한 노력들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문 및 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기도 학생인권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관련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학생참여자치 및 평화인권교육 관련 조례에 대한 집중조사 및 정책 제안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제2장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
 - 제17조는 ‘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제1항은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제2항에서는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8조에서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³⁾ 제19조에서는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⁴⁾

3) 제18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규정하고 있음

- ‘학생의 미성숙성’은 막연한 우려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교육의 목적은 ‘자율성의 신장과 민주 시민의 육성’에 있다는 경기혁신교육의 이념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20세기 후반부터 국제사회에서 아동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동의 자기결정과 참여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학생 참여 보장은 학생 인권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이자 실효적인 방안으로서 기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학생의 정책 결정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학생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일정 정도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⁵⁾ 이는 경기혁신교육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의 내용에 해당함.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제3장 제1절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한 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함.
 - 인권 교육이란 적절한 교육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교육하고 정보를 확산시키는 종합적인 노력을 의미함.
 -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로부터 예방하며 비폭력적인 인권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교육하는 것, 그리고 인권을 인권 친화적인 방법으로 가르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혁신시키는 종합적인 교육을 의미함.
 - 따라서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평화교육현장의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동조례 규정의 실질적인 실현을 통하여 평화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일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특별히 위 두 영역에 대한 집중 조언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 4)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참조

사 및 분석을 통하여 단계별 연차적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 사안과 관련한 국제 및 국내 기준의 분석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제2조 제4호의 ‘학생의 인권’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이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헌법과 법령,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등의 상위 규범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판결, 국제기구에서의 지침 및 권고 등 상위규범에 대한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조례의 주요조항이 본래에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이러한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인권 보장과 관련한 직무의 의미를 재확 인함으로써 이해 부족으로 인한 학생인권조례 이행 지체 및 오류 현상들을 극복하고, 학생인권정책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학생인권정책의 지속적 발전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2013 경기학생생활 인권교육 기본계획’ 및 ‘2013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 본 연구는 이미 마련된 경기도교육청의 차기년도 ‘경기학생생활 인권교육 기본계획’ 및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를 실현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3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통해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인권친화적 학교 모델 제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 및 경기도교육청의 인권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여 학생·교사·학부모 및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기관·학생·교사·학부모의 인권적 역할 모델을 제시하여 유기적 협력 방안을 지원하고자 함.
 - ‘학생인권조례’의 축인 ‘학교인권문화’의 확산 및 질적 성장을 위한 내부교육시

스템과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등 국내외 인권기준에 명시된 아동인권의 보호 및 증진 의무를 경기 교육의 기본가치로 천명하고, 교육청 및 학교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 관련 업무 분석을 통해 종합적·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생 방안 제시
 -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마치 학생인권과 대립 갈등관계로 비춰지고 있는 교권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루고자 하며, 서로 대립적 가치처럼 왜곡되고 있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연결고리를 인권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함.
 - 교권은 효과적인 학생 생활 지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고 의미 있는 학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교사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인권의 틀에서 올바른 교사들의 역할을 찾고자 함.

3. 연구 방법



※ 경험연구 ※

1. 경기도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 + 도·농 표본 집단조사
2. 조례 일반에 대한 조사 분석 + 학생자치 및 평화인권교육에 대한 집중 조사 분석

- 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토대로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교육주체별·영역별 조사, 학생인권 증진 방안을 제시
- 나. 문헌 연구,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인터뷰, 설문 등의 방법

□ 문헌연구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주요 조항과 관련한 쟁점 도출과 대안의 제시를 위하여, 헌법과 법령,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등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판결, 국제기구에서의 지침 및 권고 등의 문헌을 수집·분석

□ 경험연구

- 경기도 지역에서 실시된 기존의 학생인권 실태 관련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하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한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의 방식으로 경기도 지역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교육주체별·영역별 조사 및 분석
-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들의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인권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는 물론 심층면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 및 인식을 조사·분석
- 조사의 내실화를 위한 표본집단조사 특히 경기도 지역의 특성상 도·농에 대한 표본집단조사 실시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일반에 대한 설문과 분석을 통한 일반현황 분석과 더불어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경기혁신교육의 6대 중점정책의 하나인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생자치 및 평화인권교육 영역에 대한 집중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

- 학생인권과 관련한 학계, 기관, 단체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본 연구에 참여를 유도하고, 연구 방향의 설정 및 조사방법 개발, 조사의 수행, 결과 분석의 일련의 과정에서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실시
- 인권조례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축하여 이들에게 연구과정에서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연구과정에서 교육청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활용도 증대

4. 연구의 기대효과

- 교육기관의 학생인권 정책의 의미와 인식 제고
- 현행 인권보장체계의 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경기도교육청 내 학생인권 정책업무의 유기적 수행 및 효율성 강화
- 인권주류화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서의 경기교육 제시
- 학생인권신장

□ 교육기관의 학생인권 정책의 의미와 인식 제고

- 교육기관과 교육주체들의 학생인권 정책에 대해 이해 부족으로 인한 학생인권조례의 이행 정체 현상이나 이행 오류 극복과 올바른 의미의 학생인권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계기 마련 효과

□ 현행 인권보장체계의 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교육기관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책무성을 확인하고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 이행과제, 단위별 이행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제시함으로써 학생인권 보장 관련 직무의 이해부족과 이행지체 극복 및 학생인권 정책의 지속적 발전체계 확보 효과

□ 경기도교육청 내 학생인권 정책업무의 유기적 수행 및 효율성 강화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교육 및 혁신교육 정책 등과 긴밀한 관계인 평화인권교육 및 학생자치 부분에 대한 집중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단계별 연차적 정책을 제시하여 교육청 내 인권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중복 수행과 재정·인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등 효율성 극대화 효과

□ 인권주류화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서의 경기교육 제시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단체중 학생인권조례를 최초로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국내의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기 교육의 인권적 가치실현을 넘어 모든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진일보한 지방교육자치의 선구자적인 역할 기대

□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통해 행복한 학교,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 학생인권조례의 실현을 위한 연구에 기반하여, 학교와 관련기관 등에서 진정한 학생인권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를 통하여 개인, 이웃과 사회, 국가, 세계 및 자연과 조화, 상생의 관계 맺기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 평화인권교육현장이 추구하는 평화교육은 인권교육과 연결.
 - 즉, 학생인권의 보장은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지켜가는 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경기혁신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바와 직접적으로 연결.
 - 여기에는 민주주의 가치실현, 양성평등, 다문화 존중, 존속 가능한 생태운동, 양극화 해소, 차별 없애기, 비폭력 국제협력, 평화통일지향 등이 포함.

□ 학생인권신장

- 교육 영역에서의 아동인권 실현 및 보호 강화
 - 차별금지, 신체 안전 보장, 프라이버시권 보호, 표현의 자유 확대, 학생자치 활성화 등 헌법과 법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보장하는 학생인권의 실현 기반 공고화
- 인권·평화·소통을 축으로 다음 세대의 성장
 -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 운영의 학생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실현을 통해 학생의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는 물론 궁극적으로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는데 기여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학교현장 안착 방안 마련
- 학생인권 증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자료로 활용
-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경기혁신교육 및 경기평화교육현장의 실행의 정책 자료로 활용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학교현장 안착 방안 마련

-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설문조사는 물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실효적 방안모색을 통해 학교현장에 인권의식이 안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학생인권 증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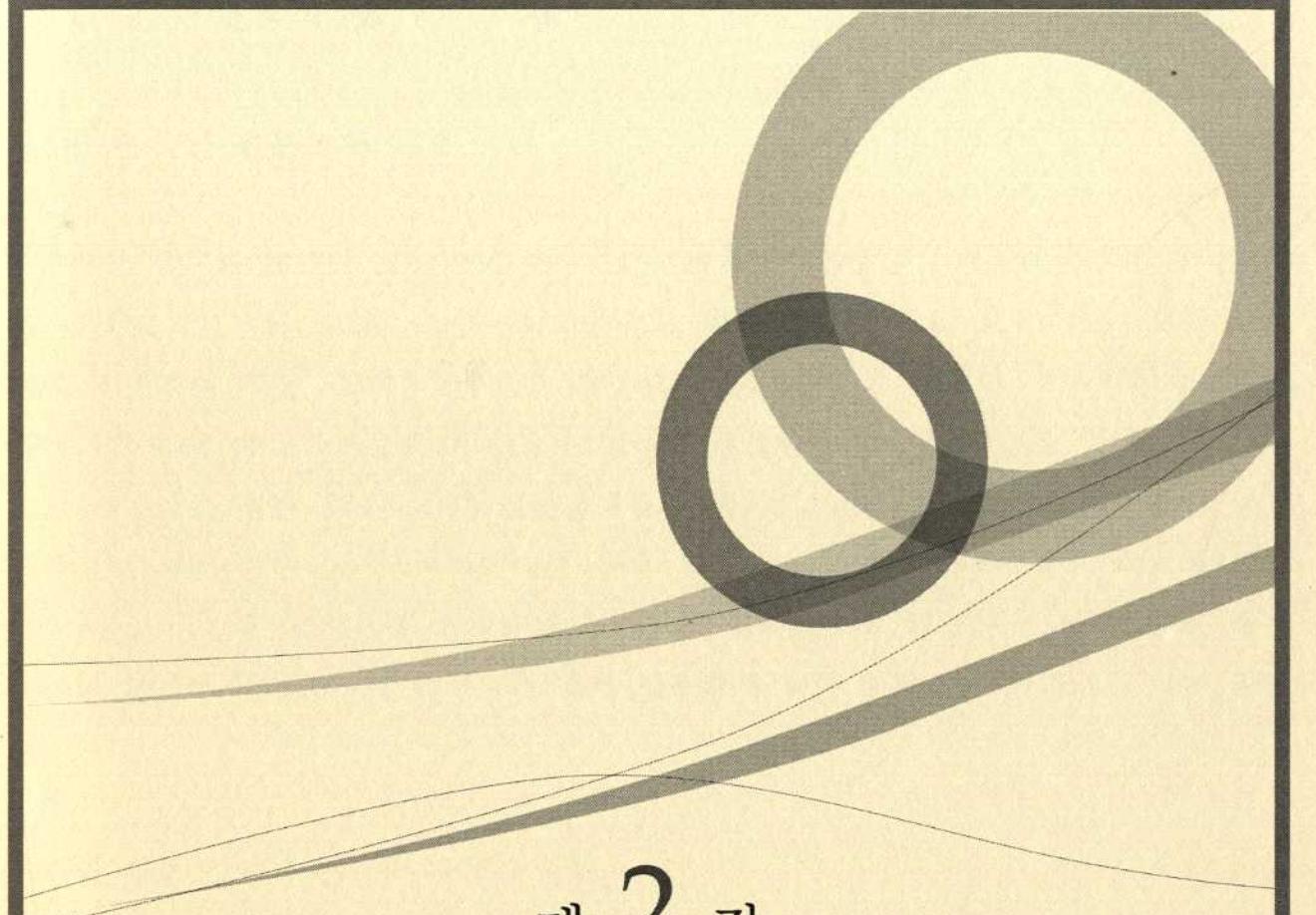
- 현행 인권조례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과 관련된 평가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실태조사로서의 환류 자료로 활용

□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학생인권의 실태 및 문제점을 토대로 한 각각의 대안이 실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여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실현 가능성의 증대된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 경기혁신교육 및 경기평화교육현장의 실행의 정책 자료로 활용

- 경기혁신교육의 6대 중점정책 중 하나인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과 경기평화교육현장의 실행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들과 인권조례 업무의 관련성 및 중복성을 파악하여 효율성인 업무추진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제 2 장

설문조사 결과 기초분석

제 2 장 설문조사 결과 기초분석

제1절 온라인 설문조사 개요

온라인 설문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경기도내 초등학교 124개교, 중학교 121개교,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포함) 124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학생의 경우 각 학교별로 특정 1개 학급(예: 5학년 1반 전체)을 지정하여 샘플링에 의한 편향성을 없앴으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일반 학부모들의 설문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샘플링에 의한 편향성을 극복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교사의 경우, 학교의 크기와 상관없이 같은 교사수를 지정하여 무작위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결국, 실제 온라인 조사와 면접조사에 따른 비교에서 샘플링에 의한 편향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온라인 설문 참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1> 온라인 설문 참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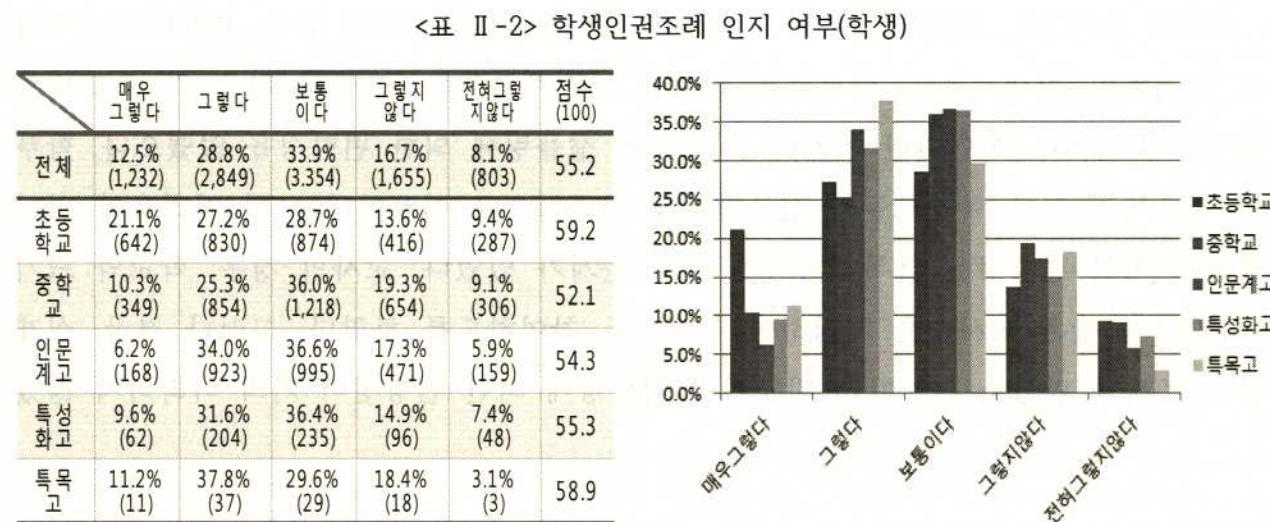
	학생	교사	학부모	전체
참가자	12,404	4,022	3,844	20,270
설문완료	9,803	3,254	2,661	15,718
유효	9,889	3,252	2,652	15,793
참가자대비 유효응답율	79.7%	80.9%	69.0%	77.9%
초등학교	3,049 (30.8%)	989 (30.4%)	935 (35.3%)	4,973 (31.5%)
중학교	3,381 (34.2%)	1,102 (33.9%)	913 (34.4%)	5,396 (34.2%)
인문계고	2,716 (27.5%)	857 (26.4%)	582 (21.9%)	4,155 (26.3%)
특성화고	645 (6.5%)	275 (8.5%)	190 (7.2%)	1,110 (7.0%)
특목고	98 (1.0%)	29 (0.9%)	32 (1.0%)	159 (1.0%)

- 괄호안의 %수치는 학교분류별 참여율이다.

제2절 학생 설문조사 결과분석

1.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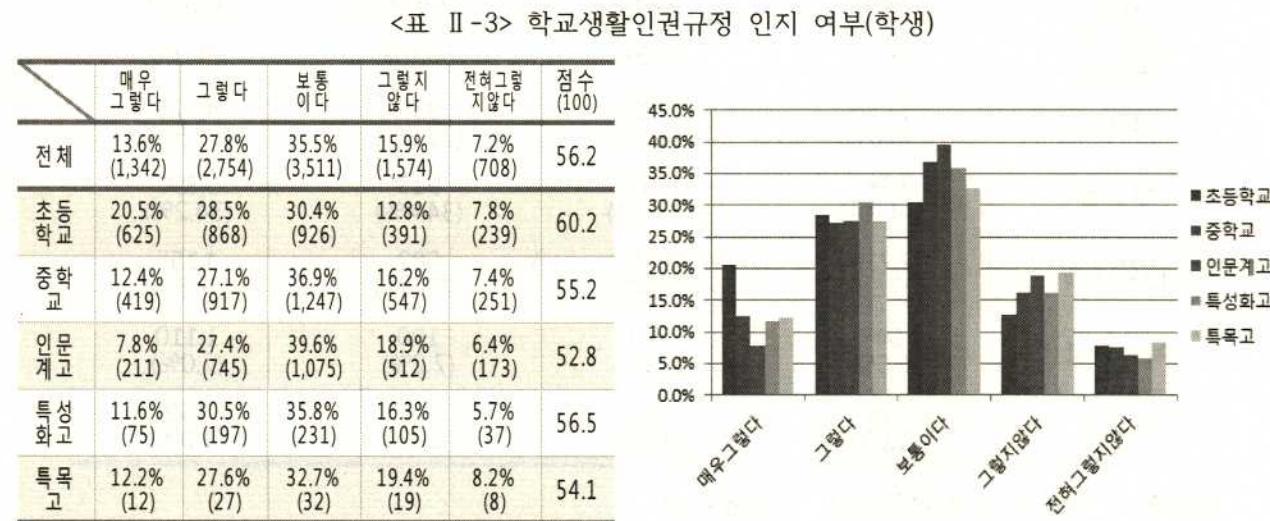
1-1)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다.



()는 해당 답변자 수

학생인권조례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초등학교와 특목고 학생들의 조례인식이 상대적 높고, 중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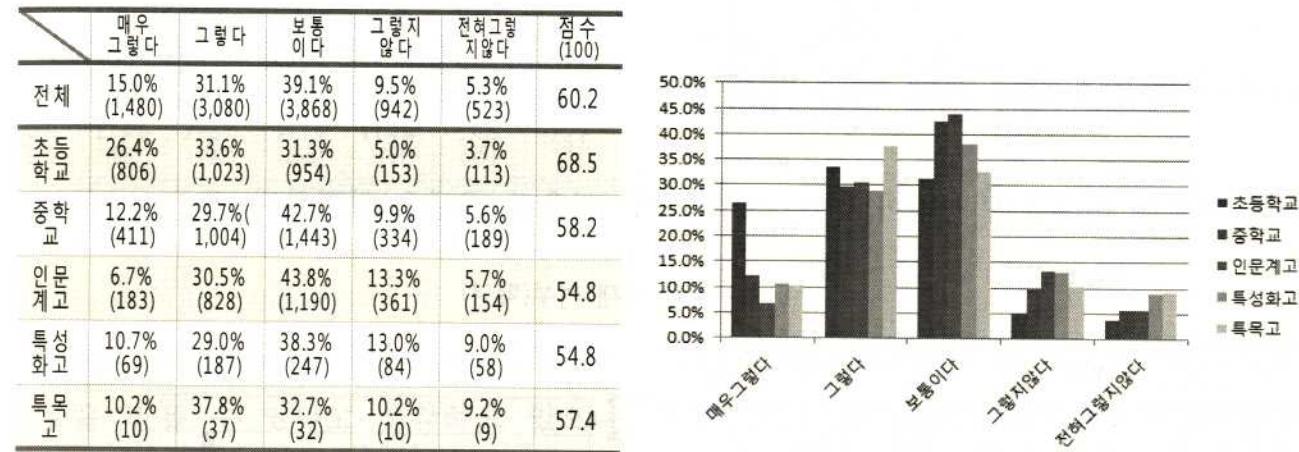
1-2)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알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인식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인식율을 보인다.

1-3)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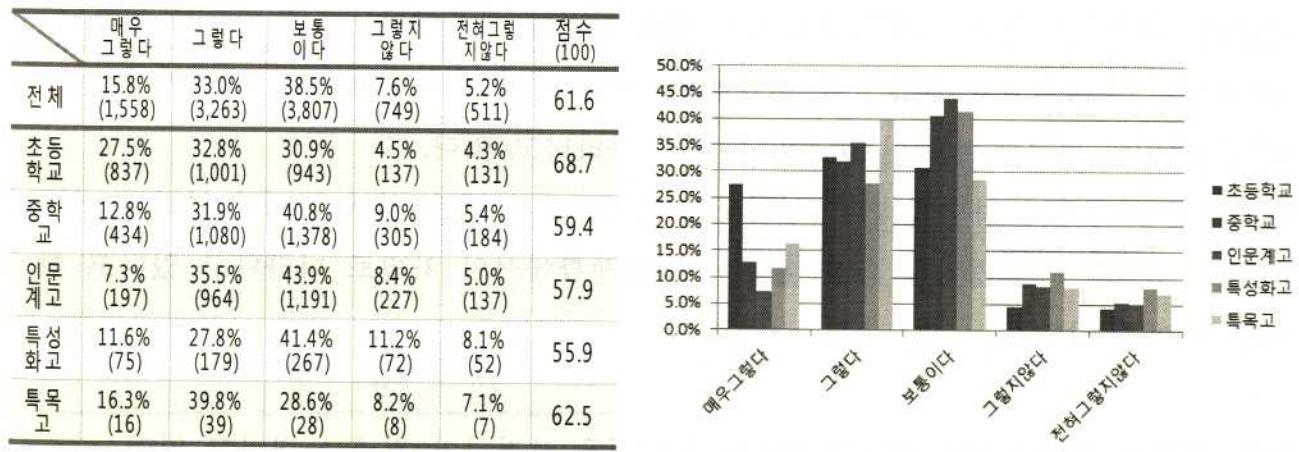
<표 II-4>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학생)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답변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각각 31.3%, 42.7%, 43.8%, 38.3%, 32.7%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과 특목고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다.

1-4)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표 II-5> 학교생활인권규정 내용 평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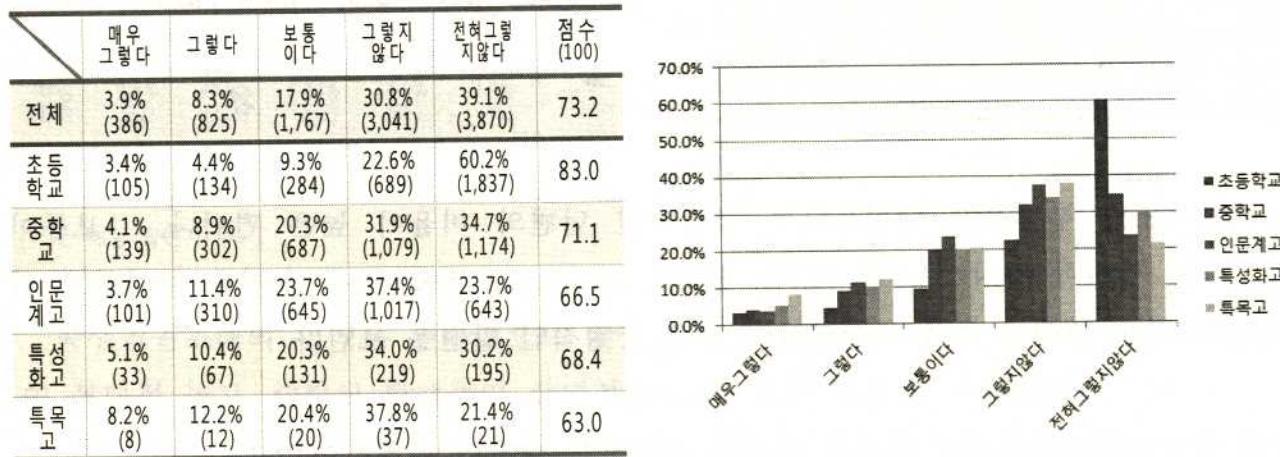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하여도 초등학생들과 특목고 학생들이 평점 68.7점과 62.5점으로 다른 학생군보다 더 높은 평점을 보이는 반면, 특성화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보이고 있다.

2. 학교생활

1) 차별 및 자유권 등

2-1) 학교나 선생님은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한다.

<표 II-6> 차별 존재 여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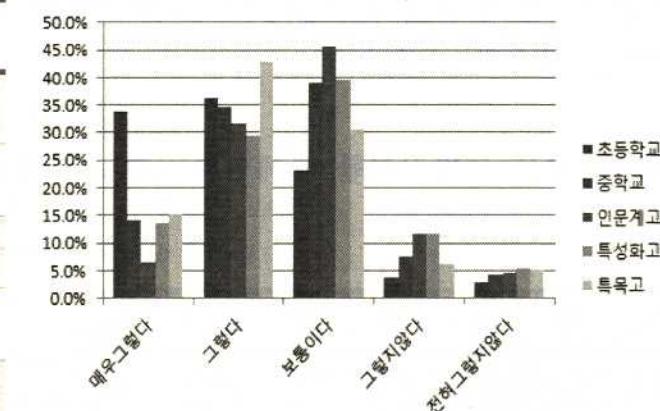
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는 특목고 > 인문계고 > 특성화고 > 중학교 >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과 학생인권보장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보였던 초등학교와 특목고를 비교하면, 차별에 대해 특목고(평점 63.0)가 초등학교(평점 83.0)에 비하여 평점이 20점이나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차별에 대한 인지도는 입시부담과 같은 경쟁에 대한 부담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즉, 경쟁에 대한 부담이 학교생활에서의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학생들은 느끼고 있다.

2-2) 학교는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I-7> 학습권 보장 여부(학생)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점수 (100)
전체	18.2% (1,799)	34.1% (3,374)	36.0% (3,557)	7.7% (763)	4.0% (396)	63.7
초등학교	33.9% (1,035)	36.4% (1,109)	23.3% (709)	3.6% (111)	2.8% (85)	73.8
중학교	14.3% (482)	34.8% (1,175)	39.1% (1,323)	7.5% (254)	4.3% (147)	61.8
인문계고	6.6% (179)	31.6% (858)	45.6% (1,239)	11.6% (316)	4.6% (124)	56.0
특성화고	13.6% (88)	29.5% (190)	39.7% (256)	11.8% (76)	5.4% (35)	58.5
특목고	15.3% (15)	42.9% (42)	30.6% (30)	6.1% (6)	5.1% (5)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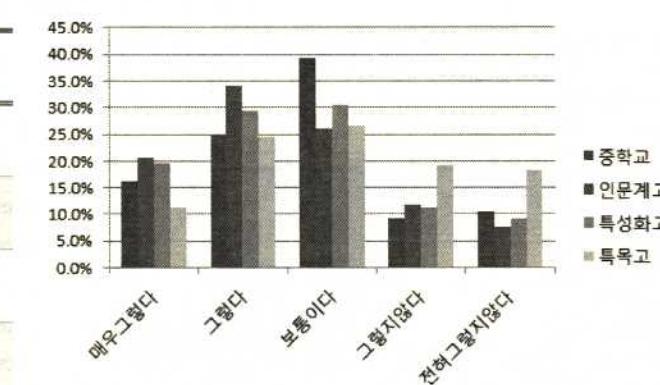
초등학생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93.6%)이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학교(교사)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인문계고의 경우는 16.2%의 학생이 부정적 답변을 하고 있다. 현재도 교과별 전담교실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섬세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2-3) 학교는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초등학교는 답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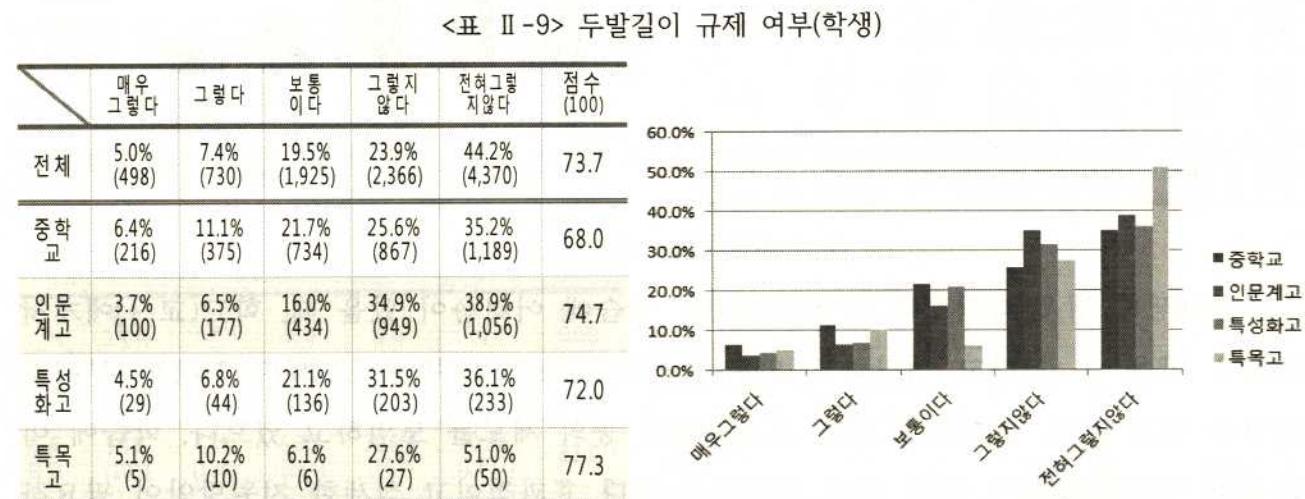
<표 II-8> 학습 선택권 보장 여부(학생)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점수 (100)
전체	20.4% (2,014)	25.3% (2,503)	31.0% (3,068)	9.9% (982)	13.4% (1,322)	57.3
중학교	16.3% (550)	24.8% (839)	39.2% (1,325)	9.2% (310)	10.6% (357)	56.8
인문계고	20.7% (562)	34.0% (923)	26.0% (707)	11.7% (318)	7.6% (206)	62.1
특성화고	19.5% (126)	29.5% (190)	30.4% (196)	11.3% (73)	9.3% (60)	59.7
특목고	11.2% (11)	24.5% (24)	26.5% (26)	19.4% (19)	18.4% (18)	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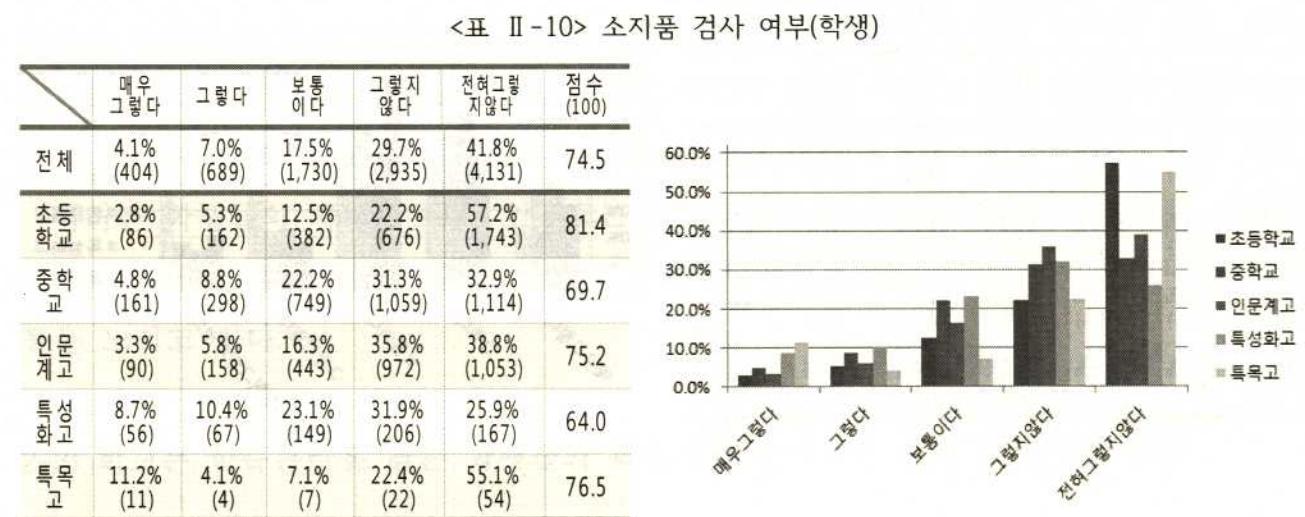
인문계고의 경우 80.7%의 학생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특목고의 경우 37.8%에 달하는 학생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등 전체 평점에 비하여 무려 10점이나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특목고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학교는 두발길이를 규제한다. (※ 초등학교는 답변 제외)



두발길이 단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중학교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17.5%, 평점도 전체보다 5점이 낮은 68.0으로 나와 고등학교의 경우보다 두발길이에 대한 단속이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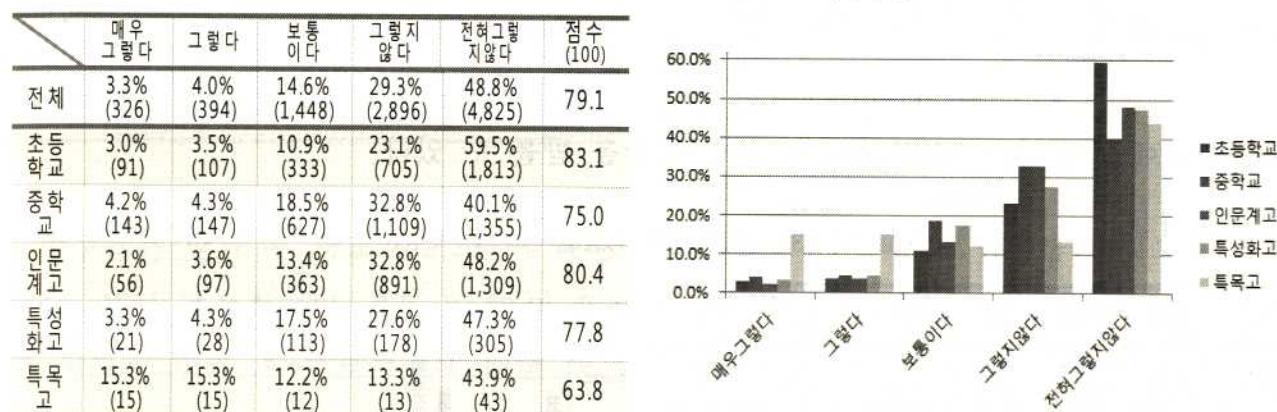
2-5) 학생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 또는 학급 전체의 소지품 검사를 한다.



학생의 사전 동의 없는 일괄 소지품 검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초등학교에서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성화고의 경우 전체보다 10.5점이나 낮은 평점을 보여 다른 학교군보다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학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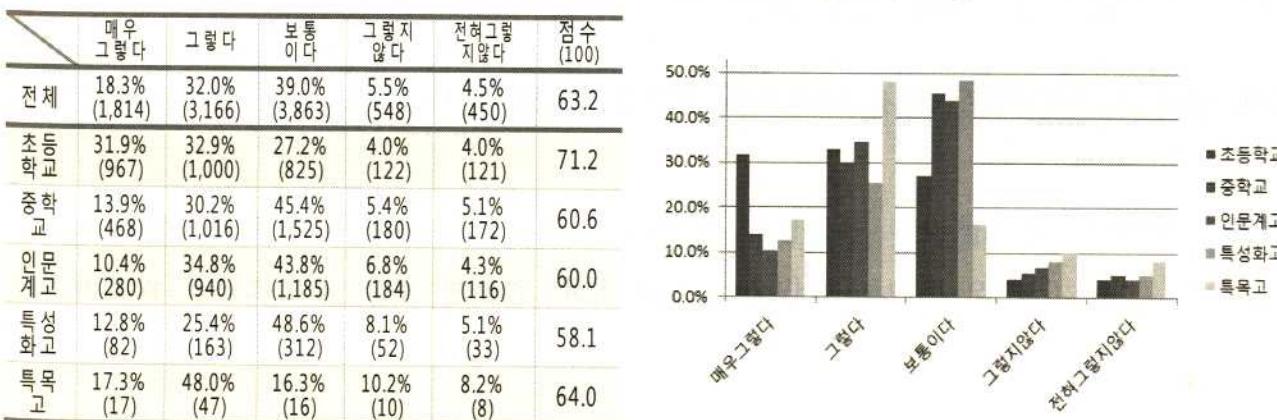
<표 II-11> 휴대전화 소지 규제 여부(학생)



휴대전화 소지 등교와 관련하여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휴대전화 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다. 다만 특이하게 특목고의 경우 다른 학교군에 비해 눈에 띄게 휴대전화 소지 등교에 대한 학교 측의 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 학교는 신문 등 학생 언론활동과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 II-12> 언론활동 및 표현의 자유 보장 여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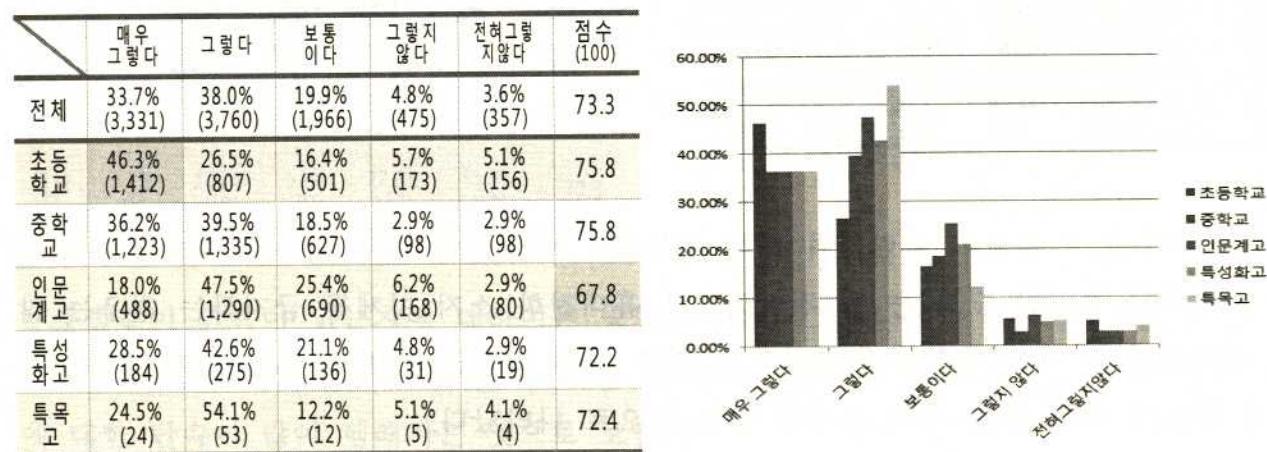


학생 언론활동 및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한 반면, 특성화고의 경우가 부정적인 답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우리 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점검이 필요하다.

2) 학생복지 등

2-8) 학교에 상담실과 상담 교사가 있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표 II-13> 상담실 및 상담교사 여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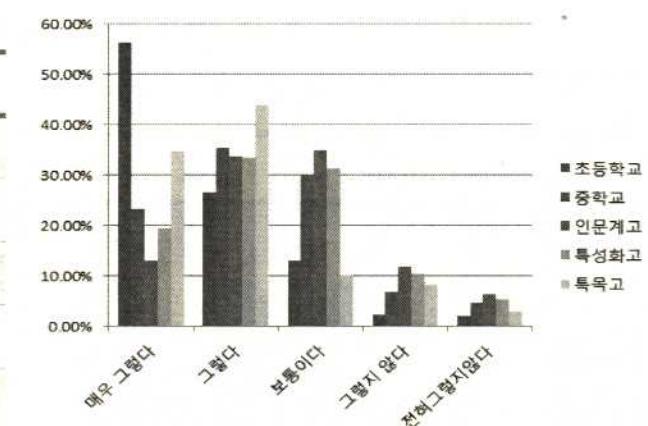


학교에 상담실과 상담 교사가 있어,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평점 수준의 답변이 나왔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46.3%에 이르는 반면 인문계고 학생들이 다소 낮은 평점을 보이고 있다.

2-9)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표 II-14> 방과 후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 여부(학생)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100)
전체	30.4% (3,011)	32.1% (3,179)	26.0% (2,570)	7.0% (695)	4.4% (434)	69.3
초등학교	56.3% (1,716)	26.5% (809)	12.9% (393)	2.2% (67)	2.1% (64)	83.2
중학교	23.2% (784)	35.3% (1,195)	30.0% (1,014)	6.8% (230)	4.7% (158)	66.4
인문계고	13.0% (352)	33.7% (916)	35.0% (951)	11.9% (322)	6.4% (175)	58.7
특성화고	19.4% (125)	33.5% (216)	31.3% (202)	10.5% (68)	5.3% (34)	62.8
특목고	34.7% (34)	43.9% (43)	10.2% (10)	8.2% (8)	3.1% (3)	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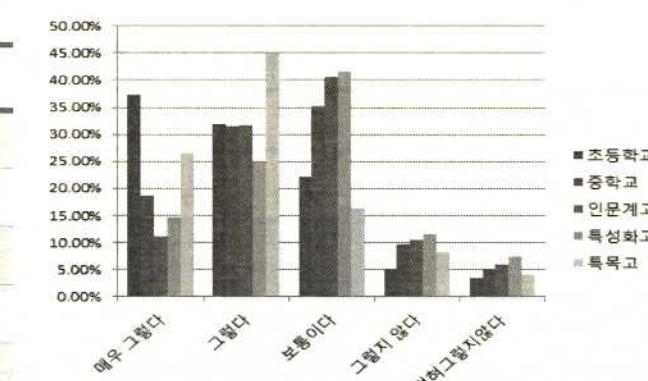


학생들은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82.8%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는 답변을 할 정도로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인문계고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2-10) 우리 학교 급식은 위생적이다.

<표 II-15> 급식 위생 여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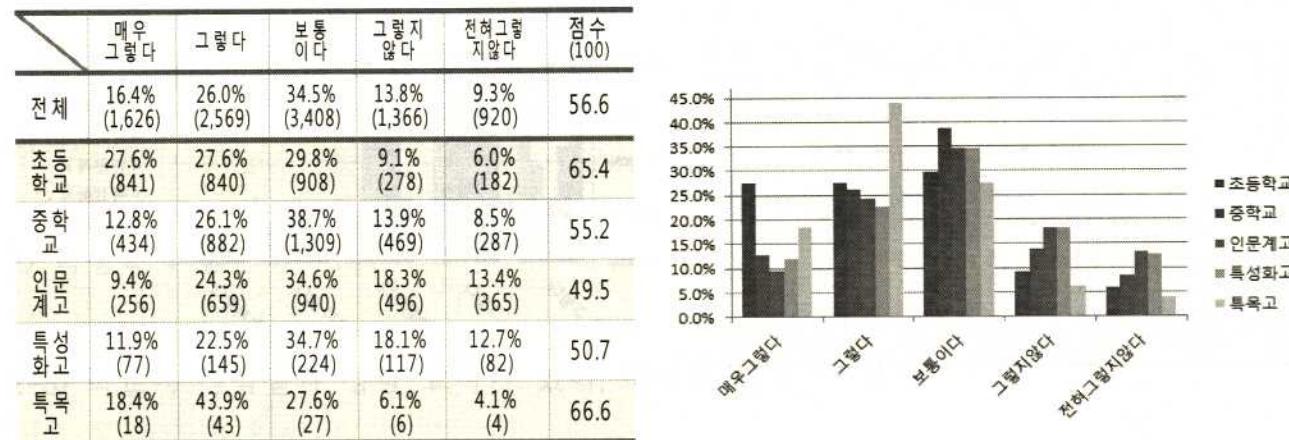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100)
전체	22.1% (2,188)	31.3% (3,098)	33.0% (3,261)	8.6% (849)	5.0% (493)	64.3
초등학교	37.3% (1,138)	31.9% (972)	22.2% (678)	5.1% (156)	3.4% (105)	73.6
중학교	18.5% (625)	31.4% (1,060)	35.3% (1,194)	9.7% (328)	5.1% (174)	62.1
인문계고	11.2% (304)	31.7% (862)	40.6% (1,104)	10.4% (283)	6.0% (163)	57.9
특성화고	14.7% (95)	24.8% (160)	41.7% (269)	11.5% (74)	7.3% (47)	57.1
특목고	26.5% (26)	44.9% (44)	16.3% (16)	8.2% (8)	4.1% (4)	70.4



학교 급식 위생에 대하여 초등학교과 특목고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반면, 인문계고와 특성화고의 경우 위생에 대한 약간의 불만을 보이고 있다.

2-11) 우리 학교는 급식 개선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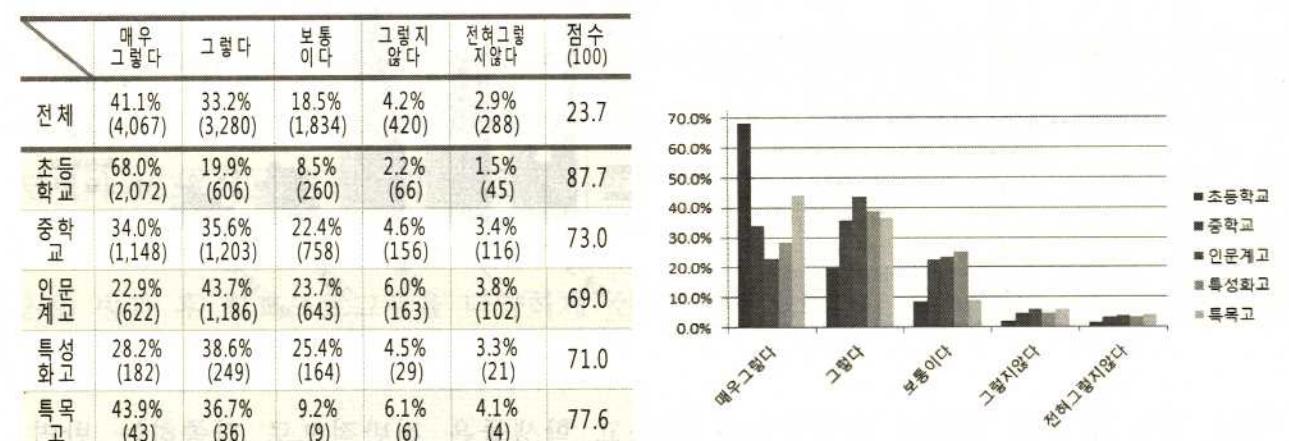
<표 II-16> 급식 개선 시 학생 의견 반영 여부(학생)



학생 설문 결과상 초등학교와 특목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식에 대한 의견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인문계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집단면접 조사에서도 급식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접할 수 있었다.

2-12) 우리 학교는 아플 때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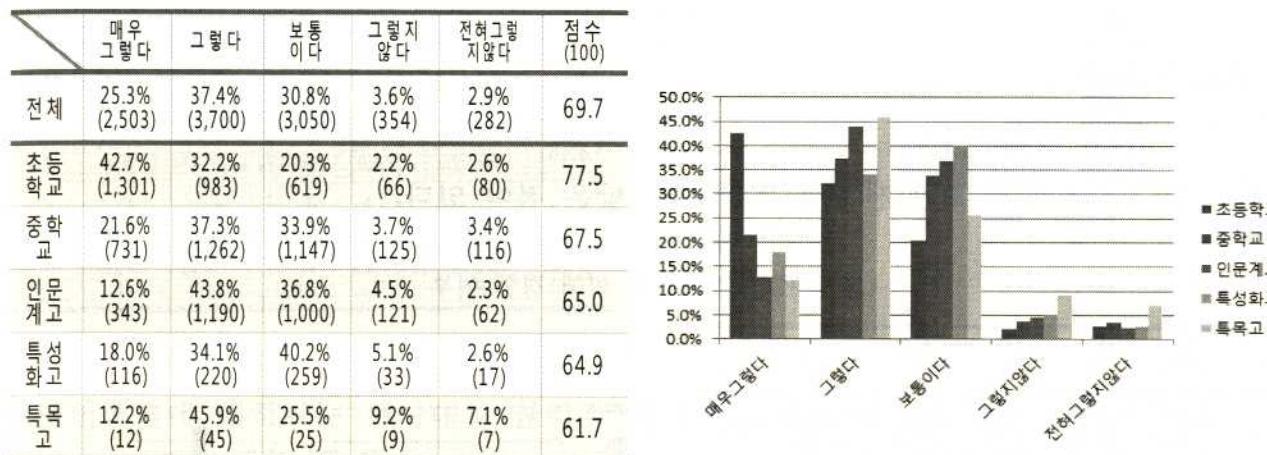
<표 II-17> 보건실 이용 가능 여부(학생)



보건실 이용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정적 답변의 비율이 미미하기는 하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2-13) 학교나 선생님이 소수 학생(장애, 다문화, 빈곤, 한부모, 조부모 운동선수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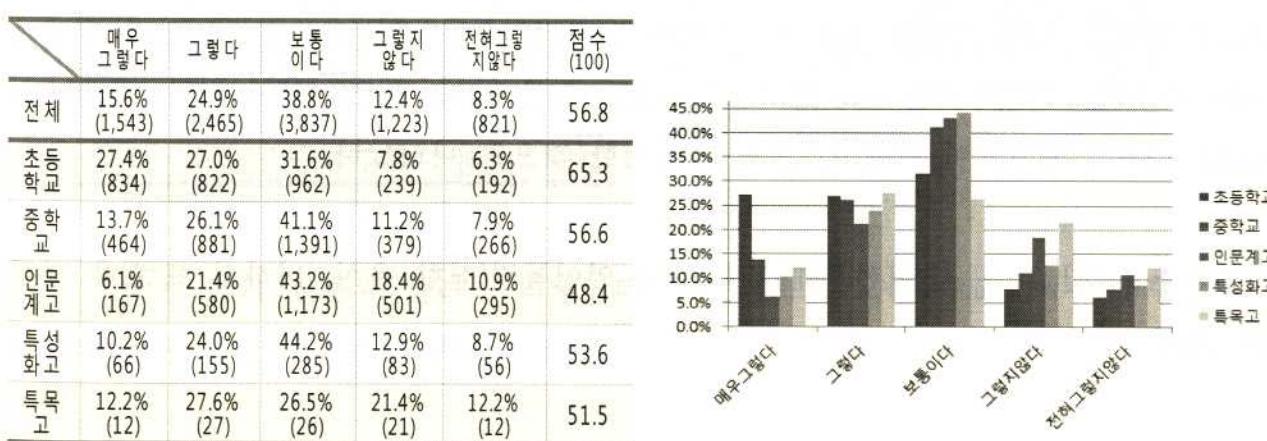
<표 II-18> 소수 학생 권리 보장 여부(학생)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74.9%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라는 답변을 하여 학교나 선생님이 소수 학생(장애, 다문화, 빈곤, 한부모, 조부모 운동선수 등)의 권리를 비교적 잘 보장하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특목고의 경우 17.3%의 학생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2-14) 학생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학생인권옹호관과 상담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표 II-19> 학생인권옹호관 인지 여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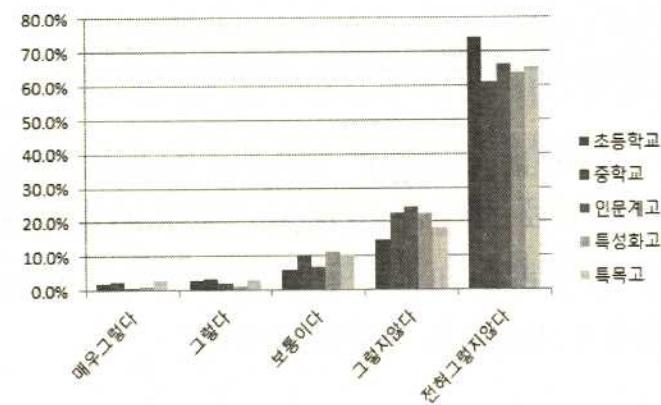
학생들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문계고 학생들의 경우 29.3%의 학생들이, 특목고의 경우 33.6%의 학생들이 알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3. 학교 폭력 등

3-1) 최근 1년간 다른 학생(선후배 포함)에게 맞은 적이 있다.

<표 II-20>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여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점수 (100)
전체	1.8% (178)	2.7% (263)	8.1% (801)	20.6% (2,035)	66.8% (6,612)	87.0
초등학교	2.1% (64)	2.9% (88)	6.1% (187)	14.5% (443)	74.4% (2,267)	89.0
중학교	2.3% (79)	3.4% (114)	10.4% (352)	22.7% (767)	61.2% (2,069)	84.3
인문계고	0.9% (25)	1.8% (50)	6.7% (181)	24.3% (660)	66.3% (1,800)	88.3
특성화고	1.1% (7)	1.2% (8)	11.0% (71)	22.8% (147)	63.9% (412)	86.8
특목고	3.1% (3)	3.1% (3)	10.2% (10)	18.4% (18)	65.3% (64)	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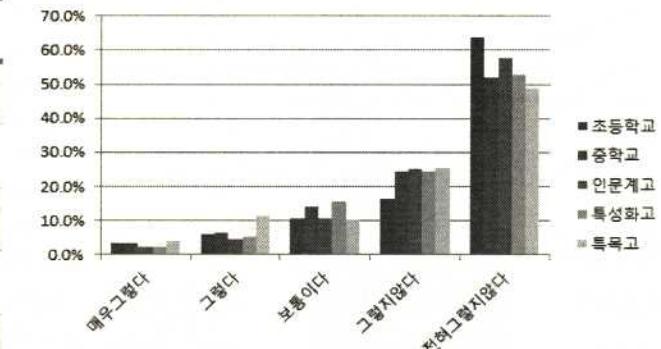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학교 내 학생폭력의 문제가 수치상 많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두 답변 비율을 중심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5%, 중학교는 5.7%, 인문계고는 2.7%, 특성화고는 2.3%, 특목고는 6.2%의 학생들이 학생 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최근 1년간 다른 학생(선후배 포함)에게 언어폭력(심한 욕설, 비하적 표현)을 당한 적이 있다.

<표 II-21> 언어폭력 피해 경험 여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점수 (100)
전체	3.0% (296)	5.7% (559)	12.2% (1,203)	22.1% (2,186)	57.1% (5,645)	81.2
초등학교	3.2% (99)	5.9% (179)	10.7% (327)	16.5% (502)	63.7% (1,942)	82.9
중학교	3.4% (116)	6.3% (213)	14.2% (480)	24.3% (821)	51.8% (1,751)	78.7
인문계고	2.3% (63)	4.5% (122)	10.5% (286)	25.1% (682)	57.5% (1,563)	82.8
특성화고	2.2% (14)	5.3% (34)	15.5% (100)	24.2% (156)	52.9% (341)	80.1
특목고	4.1% (4)	11.2% (11)	10.2% (10)	25.5% (25)	49.0% (48)	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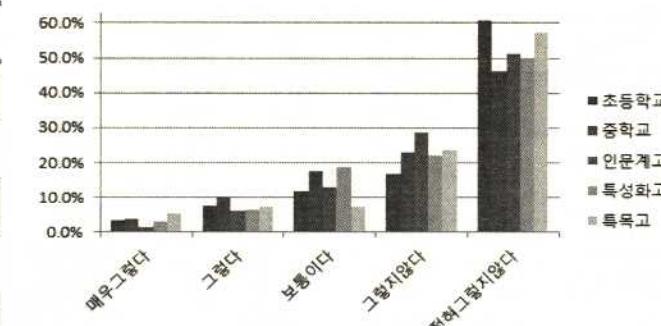


언어폭력에 대하여는 예상대로 물리적 폭력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경험치를 보이고 있는데, 특목고의 경우에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3) 최근 1년간 학교나 학급에서 학생(선후배 포함)간 폭력을 본 경우가 있다.

<표 II-22> 학교폭력 목격 경험 여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점수 (100)
전체	2.9% (283)	7.8% (771)	14.5% (1,430)	22.4% (2,220)	52.4% (5,185)	78.5
초등학교	3.2% (97)	7.7% (234)	11.9% (362)	16.7% (509)	60.6% (1,847)	81.0
중학교	3.6% (121)	9.7% (329)	17.5% (591)	22.8% (772)	46.4% (1,568)	74.7
인문계고	1.5% (41)	5.9% (159)	12.9% (351)	28.5% (774)	51.2% (1,391)	80.5
특성화고	2.9% (19)	6.5% (42)	18.4% (119)	22.0% (142)	50.1% (323)	77.4
특목고	5.1% (5)	7.1% (7)	7.1% (7)	23.5% (23)	57.1% (56)	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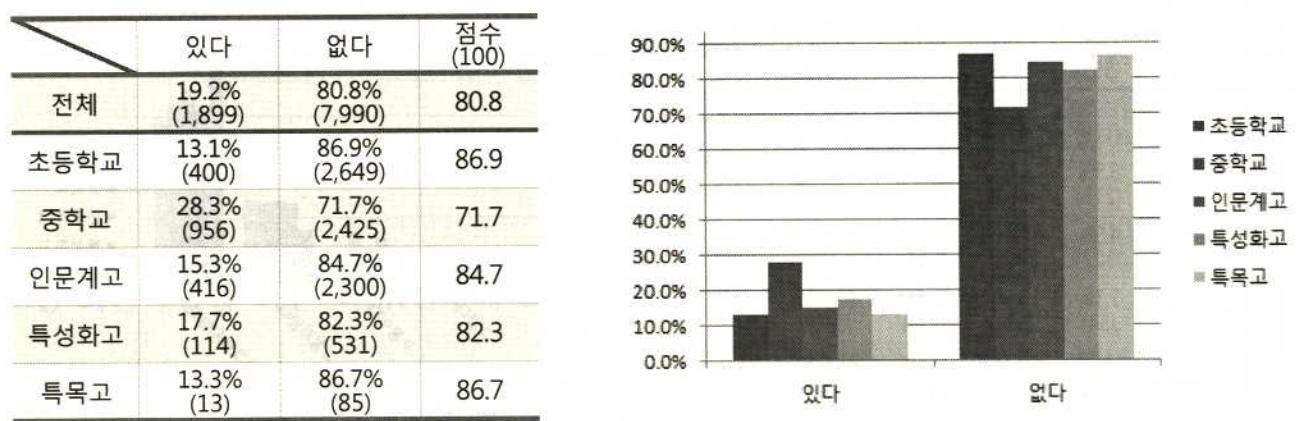


이 설문은 앞의 설문과 달리 목격형인데,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군에서 경험형의 경우보다 높은 치의 목격율을 보이고 있다.

3-4) 우리 학교는 체벌이 있습니까?

3-5) 우리학교 선생님이 언어폭력(심한 욕설, 비하적 표현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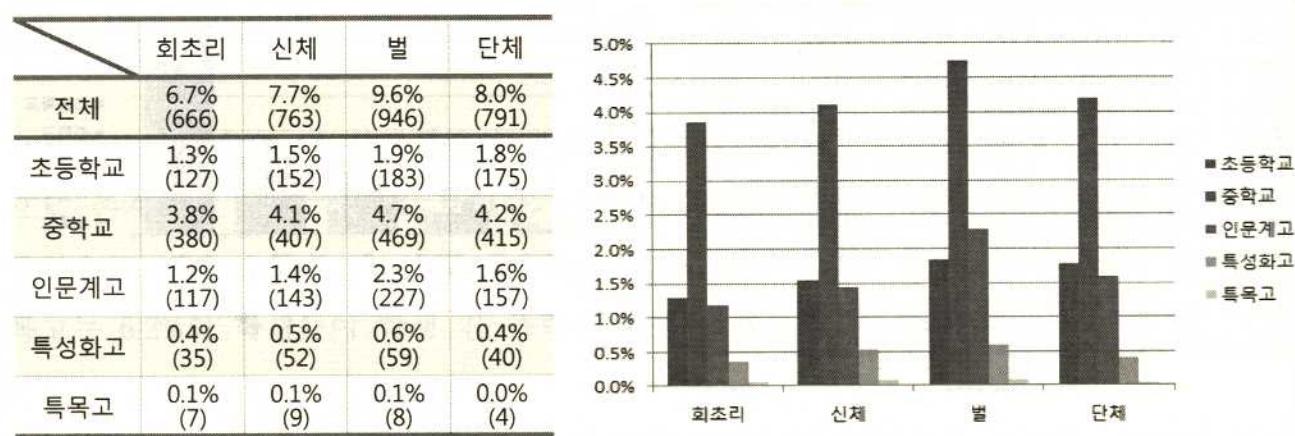
<표 II-23> 체벌 존재 여부(학생)



교사의 체벌 여부에 대해 체벌이 없다는 답변은 초등학교의 경우가 86.9%로 가장 많았고, 반대로 체벌이 있다는 답변은 중학교가 28.3%로 다른 학교군보다 큰 폭으로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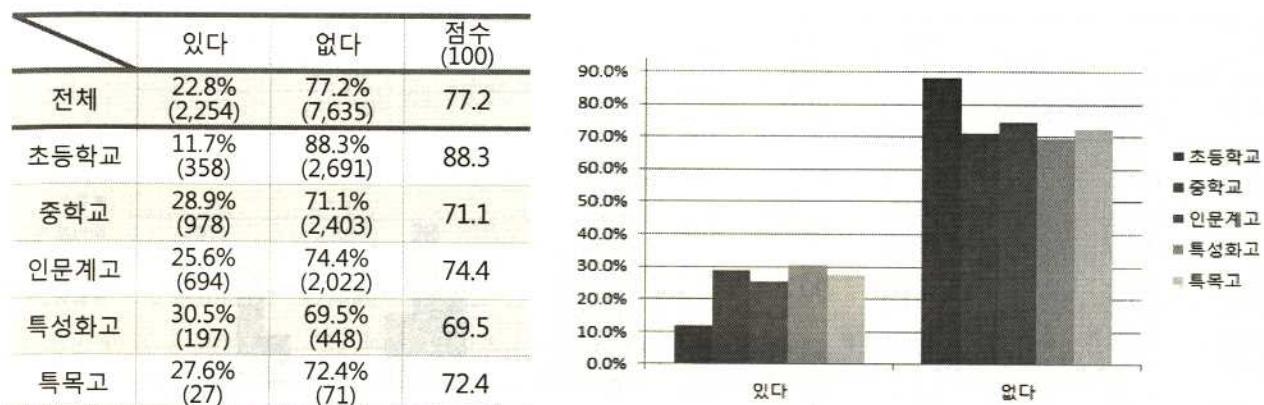
3-4-1) 있다면, 체벌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중복 답변 가능)

<표 II-24> 체벌 유형(학생)



체벌의 형태에 대하여는 회초리, 신체를 이용한 체벌, 벌 세우기, 단체기합 등의 형태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중학교 학생들의 답변이 모든 형태의 체벌 답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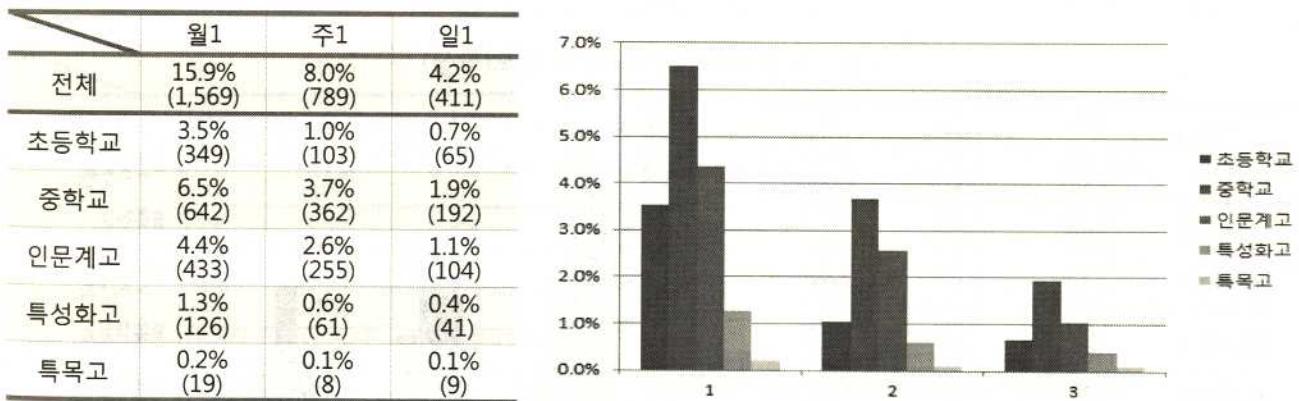
<표 II-25> 교사 언어폭력 존재 여부(학생)



교사의 언어폭력에 대한 설문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없다'는 답변의 비율이 체벌의 경우보다 다소 높으며, 나머지 학교군에서는 체벌의 경우보다 '있다'는 답변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5-1)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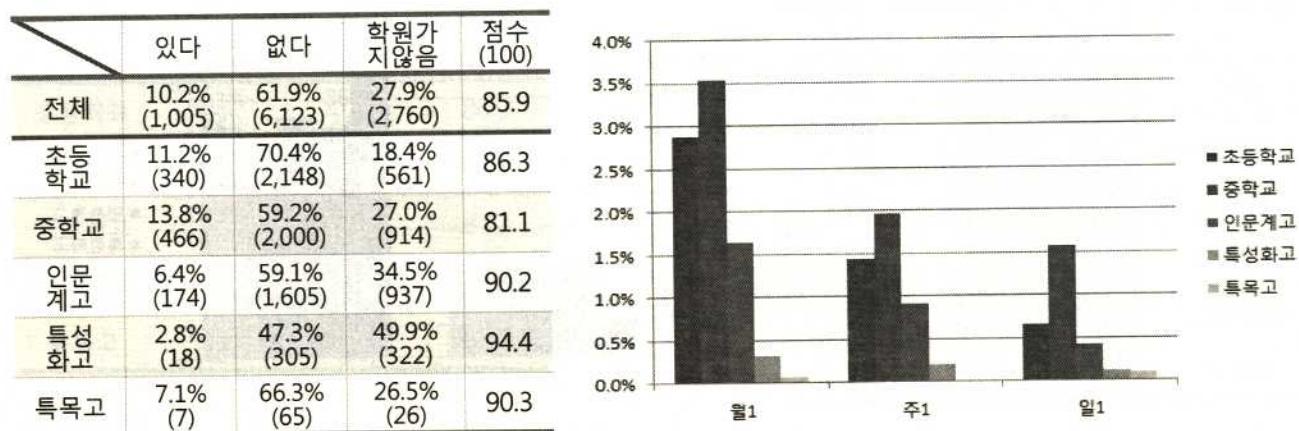
<표 II-26> 교사 언어폭력 빈도(학생)



교사의 언어폭력의 빈도에 대하여는 월 1회 정도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와 인문계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 1회 및 일 1회라는 답변도 비교적 많았다.

3-6) 학원에서 강사가 때리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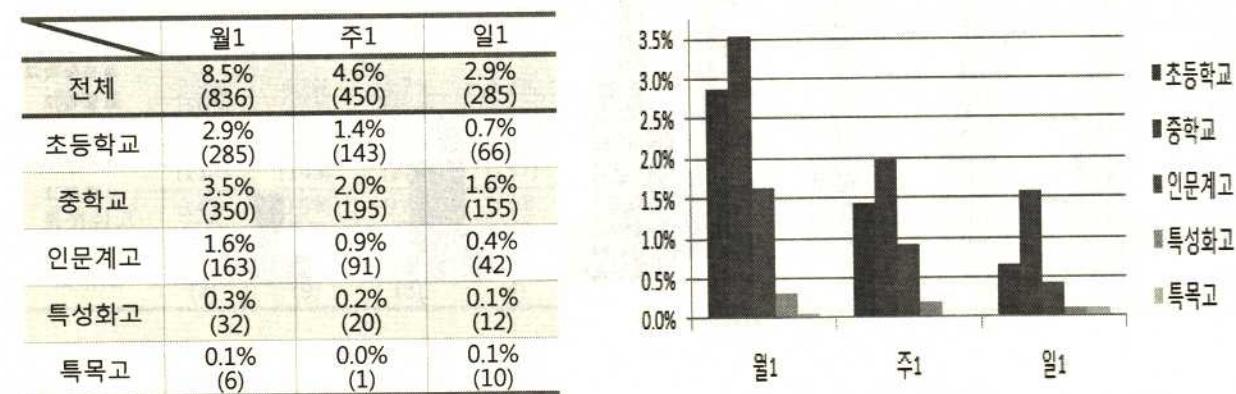
<표 II-27> 학원강사 폭력 존재 여부(학생)



학원에 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외하고 본다면 학원 강사에 의한 체벌이나 언어폭력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집단면접 조사 시 학부모들의 면담내용 상으로도 심각한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3-6-1)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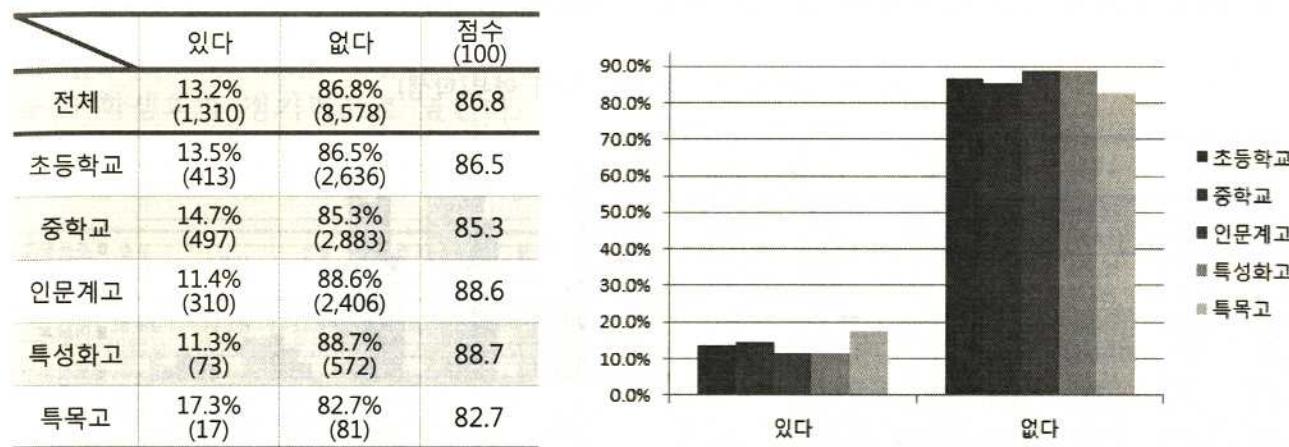
<표 II-28> 학원강사 폭력 빈도(학생)



학원 강사에 의한 체벌 및 언어폭력의 정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월 1회 > 주 1회 > 일 1회 순으로 답변이 나타나고 있다.

3-7) 부모님(혹은 다른 보호자)이 때리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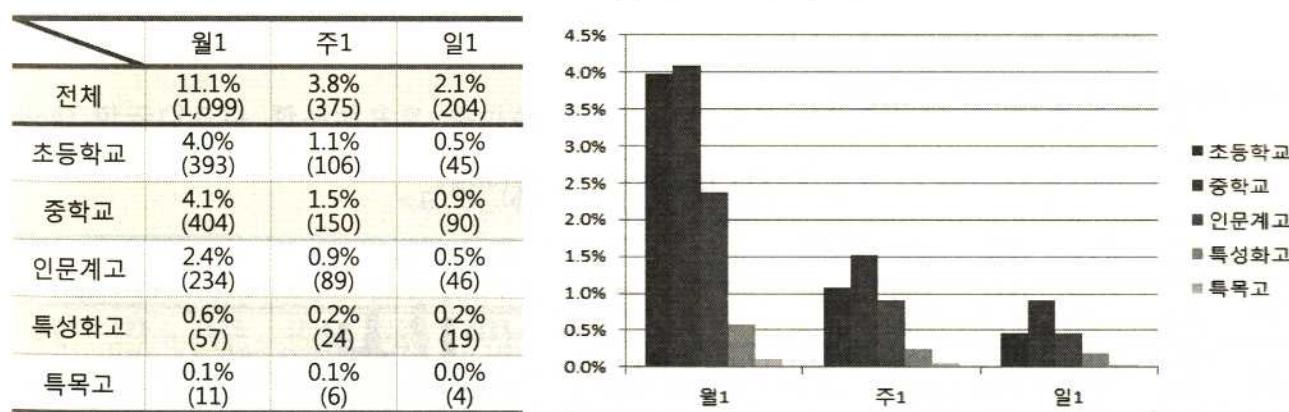
<표 II-29> 가정폭력 존재 여부(학생)



가정에서 보호자 등에 의한 폭력에 대하여 전체 학생의 13.2%의 학생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있다’는 답변은 전체 학교군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편이나 특목고의 경우가 다소 높은 것이 특이한 점이다.

3-7-1)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합니까?

<표 II-30> 가정폭력 빈도(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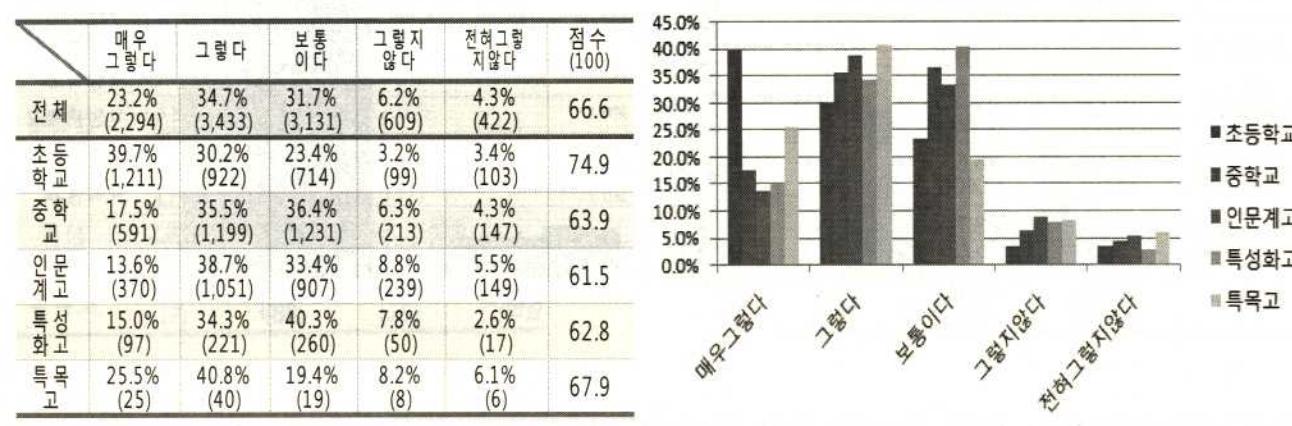


가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폭력 등에 대한 빈도도 전체적으로 월 1회 > 주 1회 > 일 1회 순으로 답변이 나타나고 있다.

4. 학생자치

4-1) 학교와 선생님은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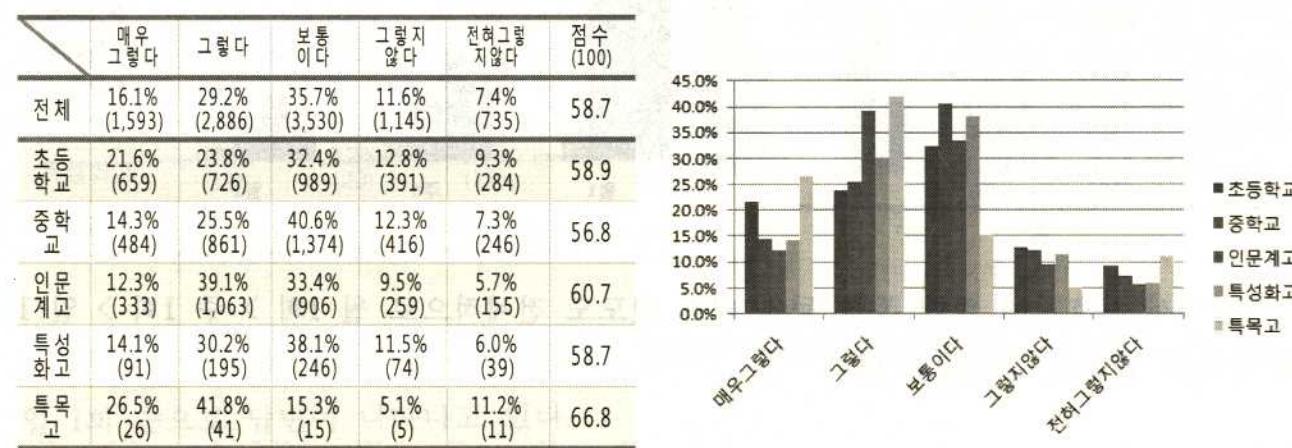
<표 II-31> 학생 자치활동 장려 여부(학생)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 보장에 대한 답변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가 가장 높은 평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목고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보장되는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면접조사에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의 자치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향후 학생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과 점검이 필요하다.

4-2) 학생회 공간이 별도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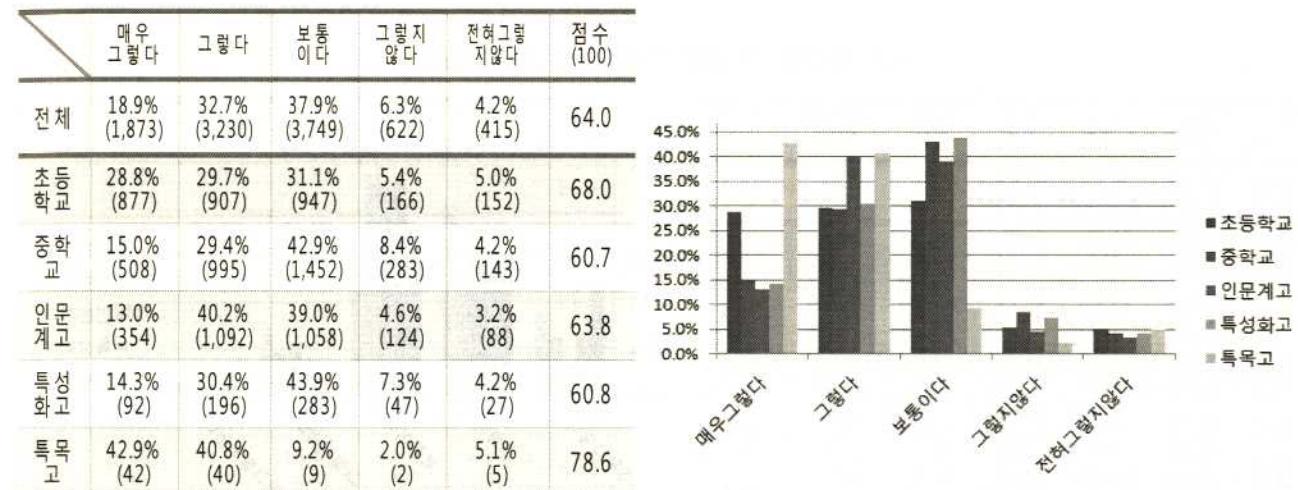
<표 II-32> 학생회 공간 여부(학생)



학생회 공간이 별도로 있는가의 설문에서는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 ‘그렇다’는 답변이 41.8%,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26.5%로 긍정적인 답변이 비교적 높고, 나머지 학교군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통이다’ 중심으로 답변이 몰려 있는 양상을 보인다.

4-3)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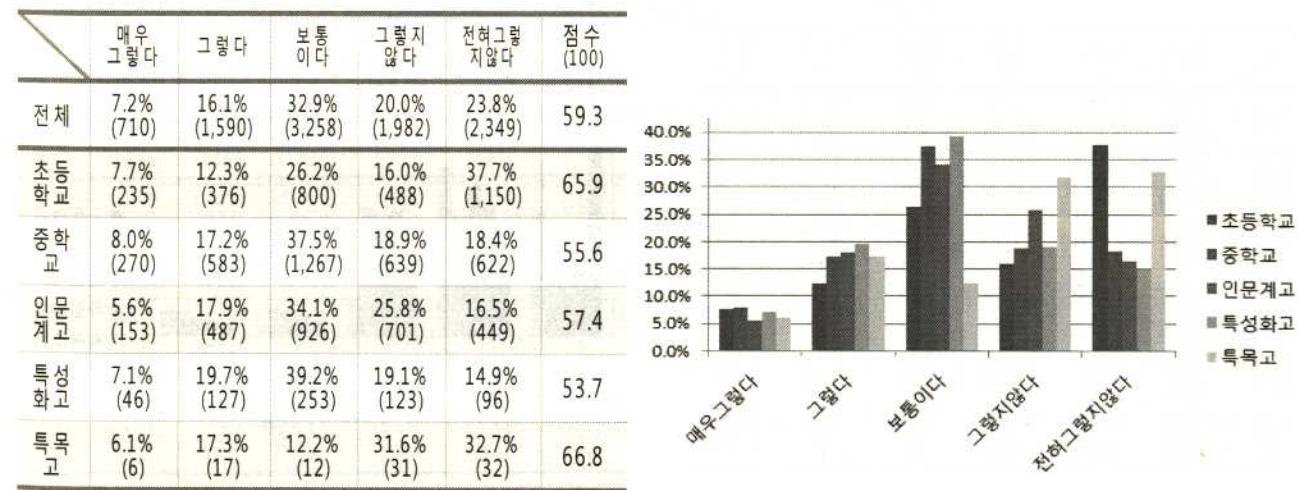
<표 II-33> 정기 학생회 여부(학생)



정기적인 학생회의 개최에 대하여 특목고의 경우 83.7%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학생회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편임을 알 수 있다.

4-4) 학급대표나 학생대표로 출마할 경우 자격 제한 조건(성적, 출석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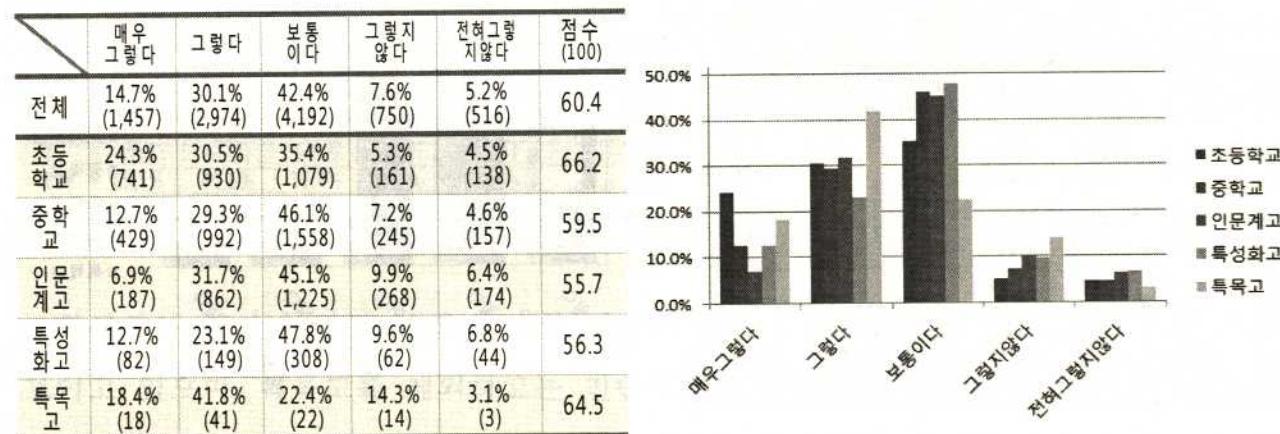
<표 II-34> 학생 대표 자격제한 여부(학생)



학생 대표 출마에 성적 등과 관련한 자격제한이 있는가에 대하여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 64.3%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여 다른 학교군보다 자격 제한이 없는 편으로 나타났다.

4-5) 학교는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학교 정책에 대해 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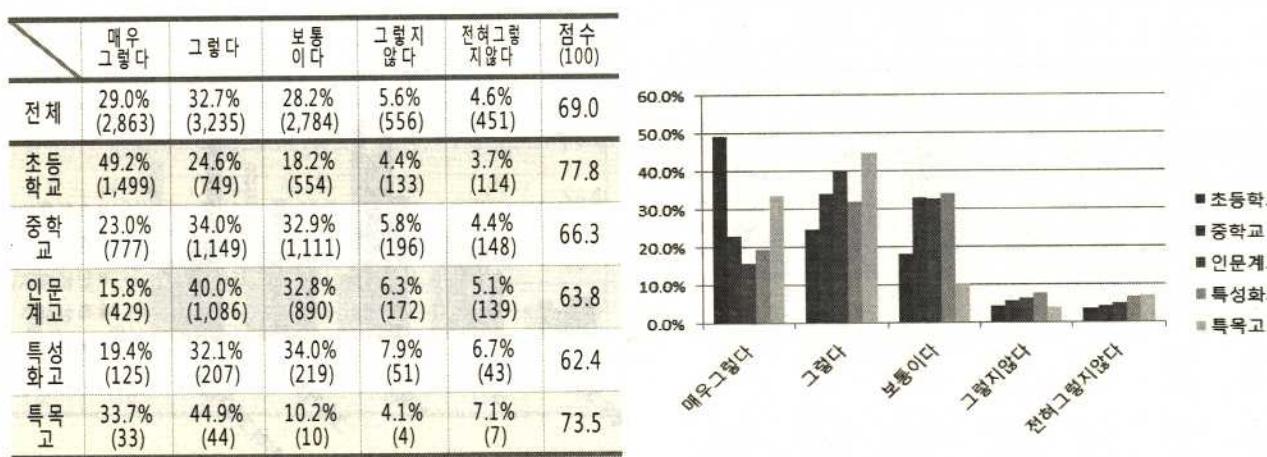
<표 II-35> 학생회 의견 반영 여부(학생)



학생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와 특목고 학생들이 학생회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4-6) 학교는 학생회가 주관하고 기획하는 행사(운동회, 축제, 수학여행 등)를 실시한다.

<표 II-36> 학생회 주관 행사 여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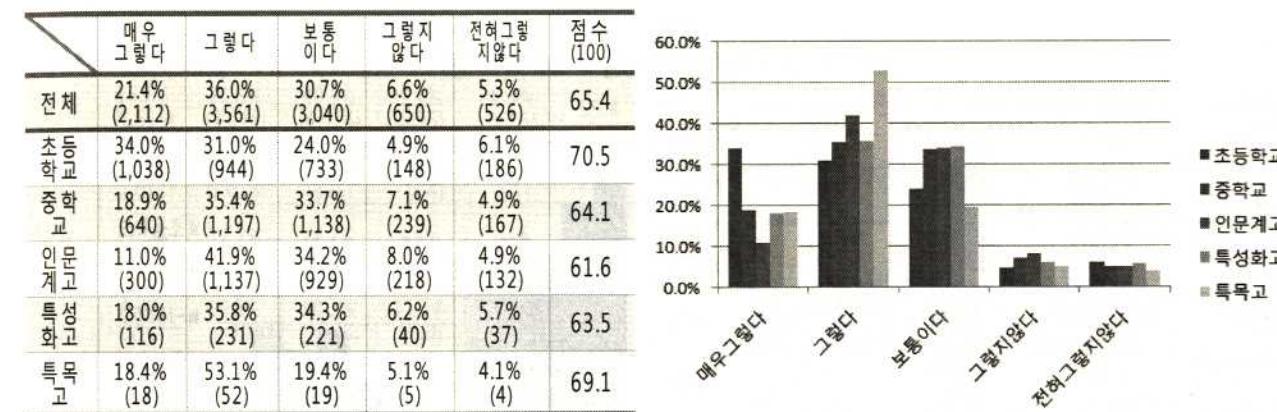


위 그래프를 보면, 이 설문에서도 역시 초등학교와 특목고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서 막대그래프가 눈에 띄게 올라가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5. 정계 절차

5-1) 별점이나 정계를 받을 경우, 학교나 선생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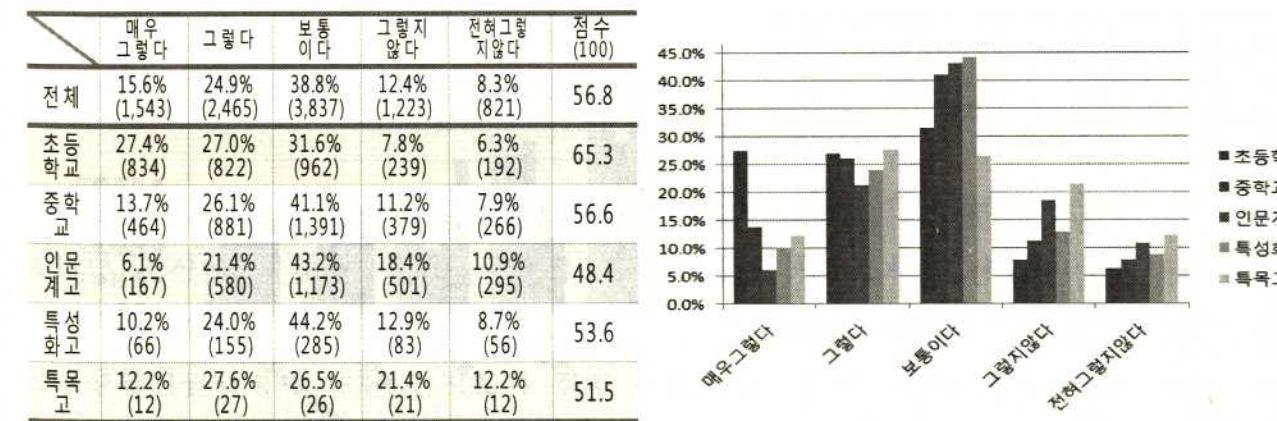
<표 II-37> 정계 이유 고지 여부(학생)



별점 및 정계 이유 설명에 대하여 중학교, 특성화고, 인문계고의 순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반면 초등학교와 특목고는 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 편이다.

5-2) 정계 절차에서 학생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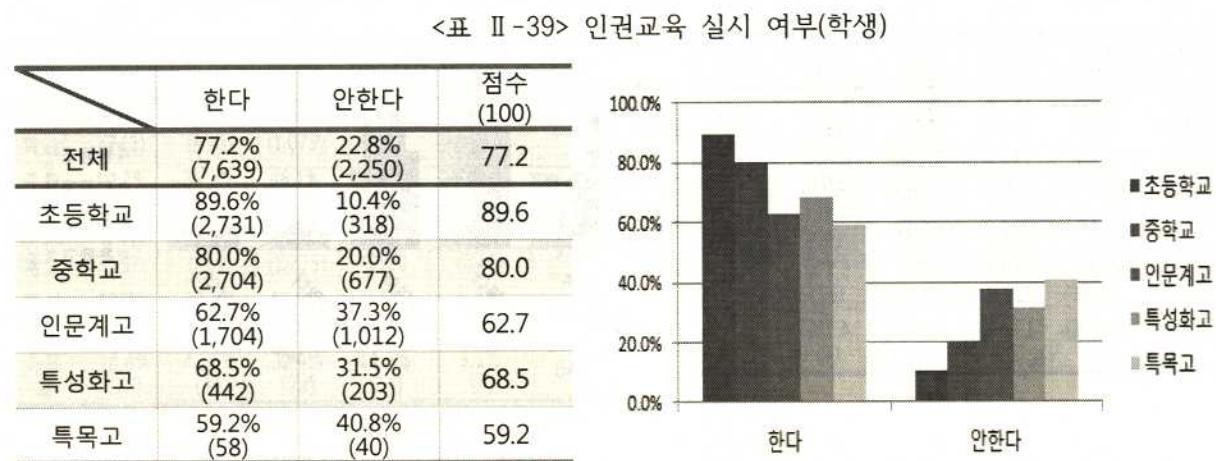
<표 II-38> 정계 시 의견진술권 보장 여부(학생)



정계 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 보장에 대하여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특히 인문계고 학생 29.3%가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을 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보이고 있는 점, 특목고 학생들도 33.6%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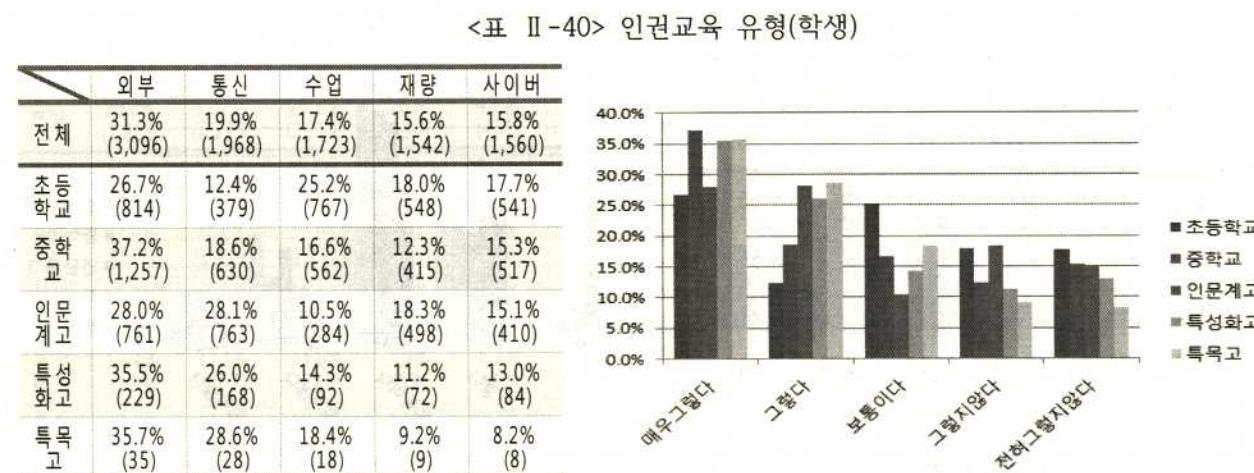
6. 인권교육

6-1) 우리 학교는 인권교육을 학기마다 실시한다.



학생 설문 결과, 입시의 하중이 상대적으로 강한 인문계고와 특목고의 경우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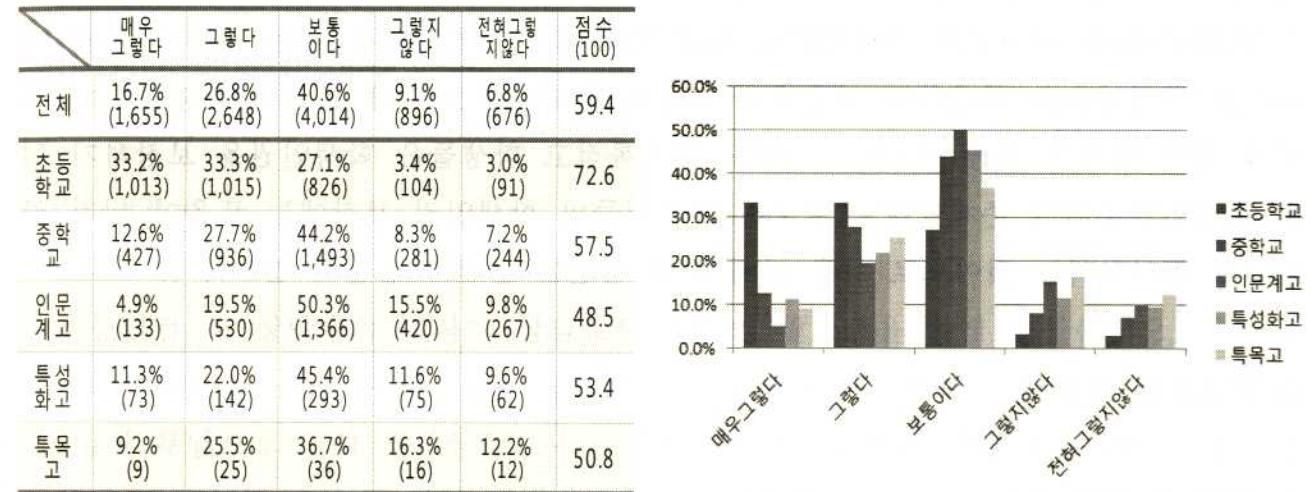
6-2) 우리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어떤 형식으로 실시합니까? (3개까지 선택가능)



2012년 조사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이 통신, 사이버, 재량 등으로 이뤄지는 형태의 인권교육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 시간에 진행되었다는 답변이 25.2%나 되는 점은 다른 학교군과 다소 다른 특징이다.

6-3)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학생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표 II-41> 인권교육 영향 평가(학생)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위의 인권교육 형태에 대한 설문에서 통신문 형태의 인권교육 답변율이 높았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권교육의 효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총평

1)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이해

우선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패턴이 동일하다. 2012년 조사에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이해도 및 효과 체감도가 학생인권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과 달리, 올 해는 두 항목이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꾸준

한 홍보와 더불어, 이 사안 자체가 학생들의 실제적인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두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효과 체감도가 2011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12년 조사에서 나타났던 교사들의 인지도 하락이 단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표본 집단의 적절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는 온라인 설문 방식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와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타 학교군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2012년 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다만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경우 조례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고 조례의 학생인권보장 내용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에 대한 답변 평점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수목적고 학생들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학생인권 보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점검이 필요하다.

2) 학교생활 관련

(1) 차별 및 자유권

성적, 가정환경 등 전통적인 차별 조건에 의한 학생 차별 인식은 ‘특목고 > 인문계 고 > 특성화고 > 중학교 > 초등학교’의 순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이 느끼는 차별의 요소가 학교의 ‘입시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 설문 결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지원은 초등학교, 특목고, 중학교 순으로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으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이 학원, 과외 등 외부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두발 길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중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많은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휴대전화 소지는 특목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완화 추세로 안착되고 있다.

교내 언론활동에 대해서는 심층면접 시 학생들의 반응을 볼 때 기대치가 낮고, 이에 따라 특별한 만족이나 불만족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학생들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 활동이나 정보수집의 기회가 낮은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학생들의 언론활동 등 표현의 자유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우리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 실제 학교생활에서의 차별이나,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선택권, 휴대전화 소지의 문제 등에 있어 다른 학교군 학생들보다 낮은 평점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2) 학생복지 등

심층면접 시 상당수의 교사가 상담교사 확대의 필요성을 높게 느꼈음에도, 학생 설문조사 결과 인문계 고등학교의 상담교사 운영율이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입시 부담으로 인해 진학상담교사가 주로 배치되고, 이에 따라 생활상담 교사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면접 대상자들은 진학상담교사보다 생활상담교사의 기본적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진학상담과 생활 상담이 별도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을 도울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군에서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특목고의 경우에는 학습 관련 프로그램이 풍부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에 대해서는 특목고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전반에서 모두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학교에서 학생 한 명당 책정하고 있는 급식비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을 위한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이 면접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며,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3) 학교폭력 등

학생 설문 결과로 보면, 학교 내 폭력은 ‘중학교 > 특성화고~특목고 > 인문계고 >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들이 느끼는 폭력은 교사, 학생, 학원 강사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을 중심으로 교실, 학교, 학원에 걸쳐 전반적인 ‘폭력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및 학원에서의 폭력에 대해서 높은 경험치 응답이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중학생들이 느끼는 가정에서의 폭력은 다른 학교급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중학교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예측되었다. 그러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의 직무피로도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거의 없게 나타났다.

4) 학생자치

학생 설문조사 결과, 학생 자치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 특목고 > 중학교~인문계고~특성화고’ 순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와 특목고에서의 학생 자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자치의 경우 온라인 설문결과에서도 그랬지만 집단면접조사에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특목고에서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게 된 기반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현재 학생자치 정체 현상을 극복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징계 절차 등

학생 설문 결과, 징계, 벌점 등에 있어서는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학생들의 변론 기회가 없어서 절차적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특목고 학생들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6) 인권교육

인문계고와 특목고의 경우 인권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답변이 많았고,

인권교육의 방법도 아직까지 통신문이나 사이버 교육의 형태가 많았다. 설문 결과상으로 통신문에 의한 진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인문계고, 특성화고, 특목고의 경우가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하여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집단면접 조사 시 파악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의 경우 인권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권교육을 받았음에도 그 교육이 인권교육이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교육을 인권교육과 혼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인권의 개념과 이해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실제적인 인권교육이 행해지지 못하거나 집단교육 등으로 진행된 방법론상의 한계 등에서 오는 문제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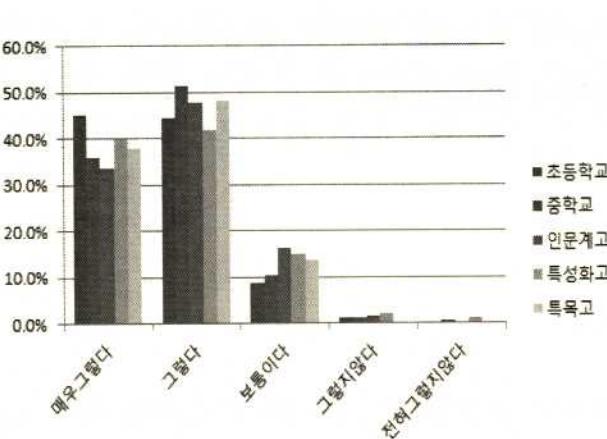
제3절 교사 설문조사 결과분석

1.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이해

1-1)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다.

<표 II-42> 학생인권조례 인지 여부(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100)
전체	38.7% (1,257)	47.5% (1,546)	12.0% (389)	1.4% (46)	0.4% (14)	80.6
초등학교	45.3% (448)	44.4% (439)	8.9% (88)	1.2% (12)	0.2% (2)	83.3
중학교	36.1% (398)	51.5% (568)	10.4% (115)	1.3% (14)	0.6% (7)	80.3
인문계고	33.8% (290)	47.8% (410)	16.5% (141)	1.6% (14)	0.2% (2)	78.4
특성화고	40.0% (110)	41.8% (115)	14.9% (41)	2.2% (6)	1.1% (3)	79.4
특목고	37.9% (11)	48.3% (14)	13.8% (4)	0.0% (0)	0.0% (0)	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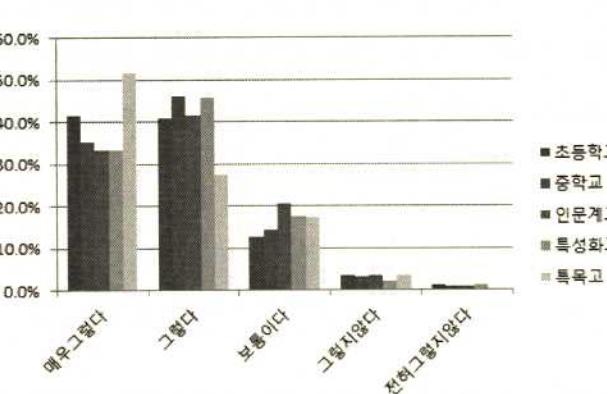


교사들의 경우 대체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보통이라는 답변의 비율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1-2)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알고 있다.

<표 II-43> 학교생활인권규정 인지 여부(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100)
전체	36.8% (1,197)	43.1% (1,401)	15.8% (514)	3.4% (109)	1.0% (31)	77.9
초등학교	41.7% (412)	40.8% (404)	12.7% (126)	3.6% (36)	1.1% (11)	79.6
중학교	35.5% (391)	46.1% (508)	14.3% (158)	3.2% (35)	0.9% (10)	78.0
인문계고	33.5% (287)	41.4% (355)	20.7% (177)	3.6% (31)	0.8% (7)	75.8
특성화고	33.5% (92)	45.8% (126)	17.5% (48)	2.2% (6)	1.1% (3)	77.1
특목고	51.7% (15)	27.6% (8)	17.2% (5)	3.4% (1)	0.0% (0)	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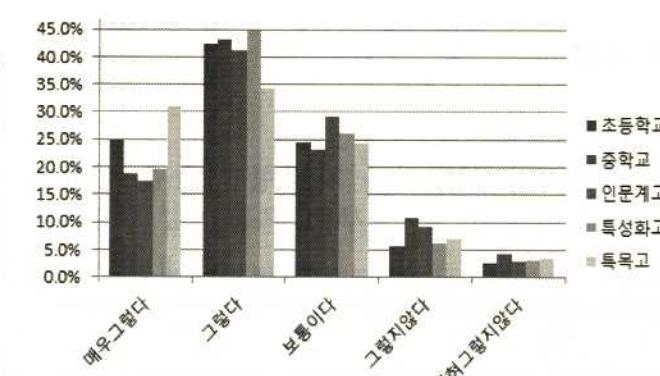


교사 설문조사 결과, 학생생활인권규정 인지도 설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전체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인지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답변을 보이고 있다.

1-3)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

<표 II-44>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100)
전체	20.4% (663)	42.4% (1,380)	25.4% (827)	8.5% (275)	3.3% (107)	67.0
초등학교	24.9% (246)	42.4% (419)	24.5% (242)	5.7% (56)	2.6% (26)	70.3
중학교	18.7% (206)	43.0% (474)	23.2% (256)	10.9% (120)	4.2% (46)	65.3
인문계고	17.3% (148)	41.3% (354)	29.2% (250)	9.3% (80)	2.9% (25)	65.2
특성화고	19.6% (54)	44.7% (123)	26.2% (72)	6.2% (17)	3.3% (9)	67.8
특목고	31.0% (9)	34.5% (10)	24.1% (7)	6.9% (2)	3.4% (1)	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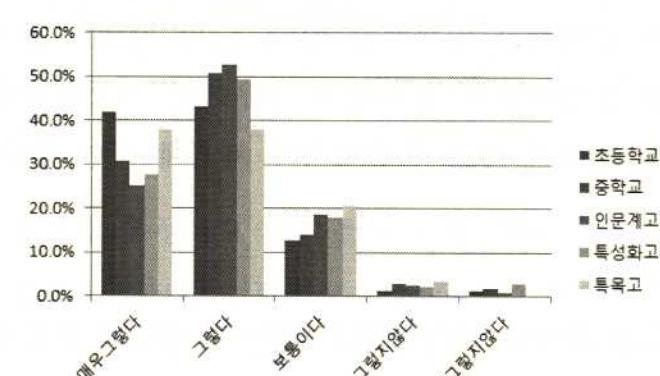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이 없지 않은데, 특히 중학교와 인문계고 교사들의 경우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답변율이 각각 15.1%, 12.2%에 이르고 있다.

1-4)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표 II-45> 학교생활인권규정 내용 평가(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100)
전체	32.4% (1,054)	48.7% (1,583)	15.3% (498)	2.2% (71)	1.4% (46)	77.1
초등학교	41.9% (414)	43.1% (426)	12.8% (127)	1.1% (11)	1.1% (11)	80.9
중학교	30.7% (338)	50.6% (558)	14.2% (156)	2.8% (31)	1.7% (19)	76.4
인문계고	25.1% (215)	52.7% (452)	18.7% (160)	2.6% (22)	0.9% (8)	74.6
특성화고	27.6% (76)	49.5% (136)	17.8% (49)	2.2% (6)	2.9% (8)	74.2
특목고	37.9% (11)	37.9% (11)	20.7% (6)	3.4% (1)	0.0% (0)	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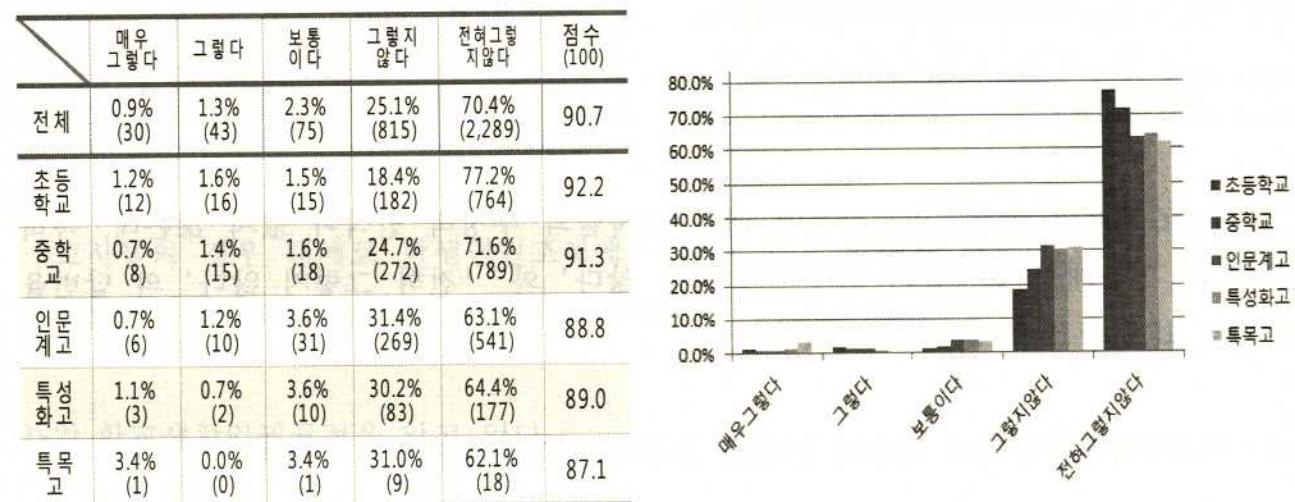
학교생활인권규정의 학생인권 존중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교사들은 조례의 학생인권 보장성(교사 전체 평점 67.0)보다는 자체 규정인 학교생활인권규정(교사 전체 평점 77.1)에 대하여 훨씬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 교사들의 경우 다른 학교군 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낮게 평가하고 있다.

2. 학교생활

1) 차별

2-1) 학교가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한다.

<표 II-46> 차별 존재 여부(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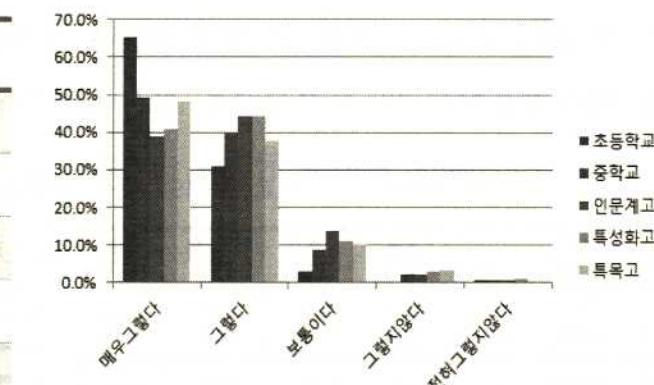


성적이나 가정형편을 이유로 한 차별 여부에 대하여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차별이 없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차별이 없다거나 전혀 없다는 답변을 중심으로 본다면 고등학교의 교사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들보다는 해당 답변율이 다소 떨어져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2-2) 학교는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I-47> 학습권 보장 여부(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점수 (100)
전체	50.7% (1,648)	38.7% (1,258)	8.4% (273)	1.7% (54)	0.6% (19)	84.3
초등학교	65.2% (645)	30.9% (306)	2.9% (29)	0.4% (4)	0.5% (5)	90.0
중학교	49.2% (542)	39.8% (439)	8.5% (94)	2.0% (22)	0.5% (5)	83.8
인문계고	39.1% (335)	44.3% (380)	13.7% (117)	2.2% (19)	0.7% (6)	79.7
특성화고	40.7% (112)	44.4% (122)	10.9% (30)	2.9% (8)	1.1% (3)	80.2
특목고	48.3% (14)	37.9% (11)	10.3% (3)	3.4% (1)	0.0% (0)	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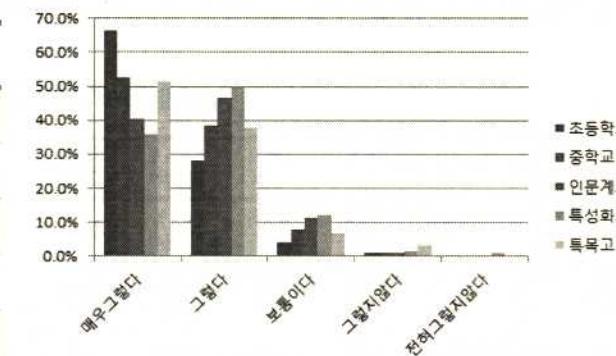


학습곤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대부분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문계고 교사들이 다른 학교군의 교사들보다 약간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2-3) 학교가 소수 학생(장애, 다문화, 빈곤, 한부모, 조부모 운동선수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표 II-48> 소수 학생 권리 보장 여부(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점수 (100)
전체	52.2% (1,698)	38.3% (1,246)	8.1% (263)	1.0% (34)	0.3% (11)	85.3
초등학교	66.4% (657)	28.0% (277)	4.2% (42)	1.0% (10)	0.3% (3)	89.8
중학교	52.5% (579)	38.4% (423)	8.0% (88)	0.9% (10)	0.2% (2)	85.5
인문계고	40.6% (348)	46.6% (399)	11.4% (98)	1.1% (9)	0.4% (3)	81.5
특성화고	36.0% (99)	49.5% (136)	12.0% (33)	1.5% (4)	1.1% (3)	79.5
특목고	51.7% (15)	37.9% (11)	6.9% (2)	3.4% (1)	0.0% (0)	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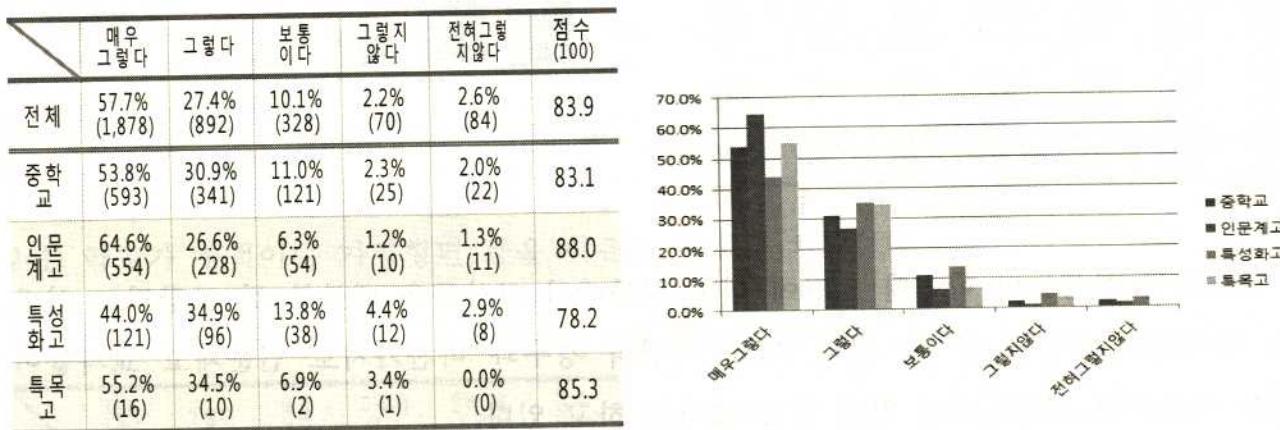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인문계고와 특성화고 교사들이 다른 학교군의 교사들보다 '보통이다'라는 답변의 비율이 높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교사들은 소수학생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본다.

2) 자유권

2-4) 학교는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응답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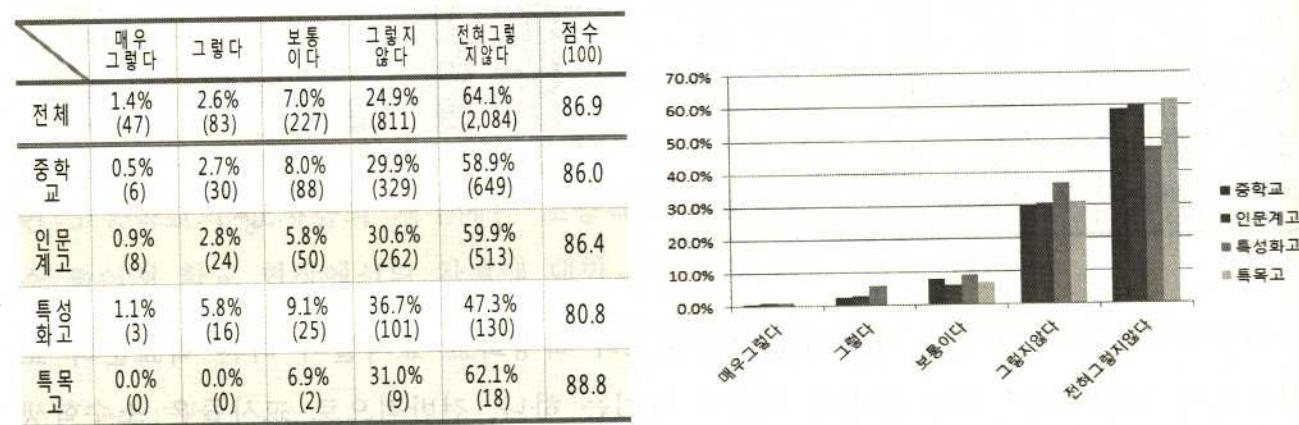
<표 II-49> 학습 선택권 보장 여부(교사)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의 선택권 보장에 대하여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특성화고와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약간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2-5) 학교는 두발길이를 규제한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응답하지 마십시오)

<표 II-50> 두발길이 규제 여부(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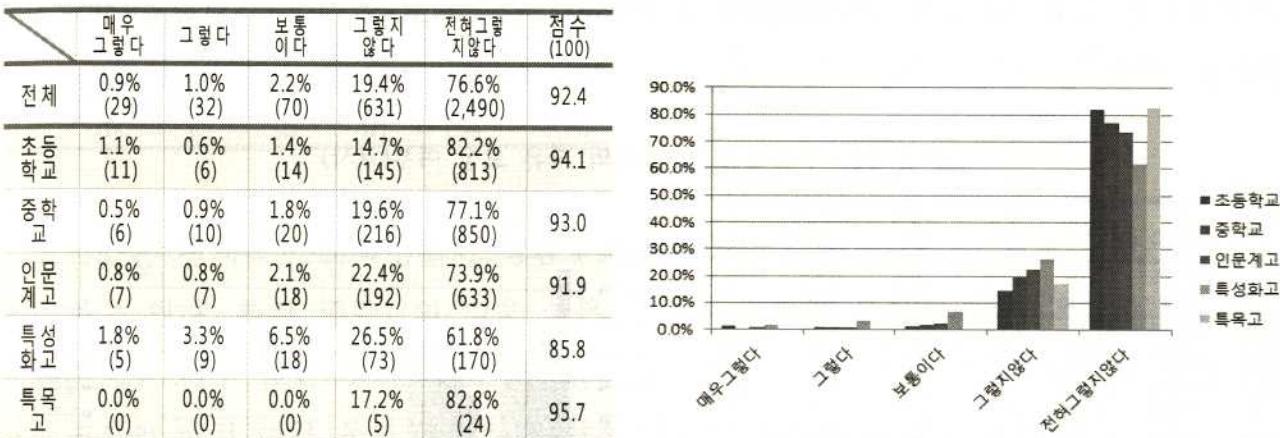


두발길이 규제에 대하여 중학교와 인문계고, 특목고 교사들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0% 안팎에 이르고 있으며, 중학교를 제외한 학교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도 30%를 넘고 있다. 다만 특성화고 교사들의 답변에서는 상대적으로 두 발 길이 규제가 약간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학생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 또는 학급 전체의 소지품 검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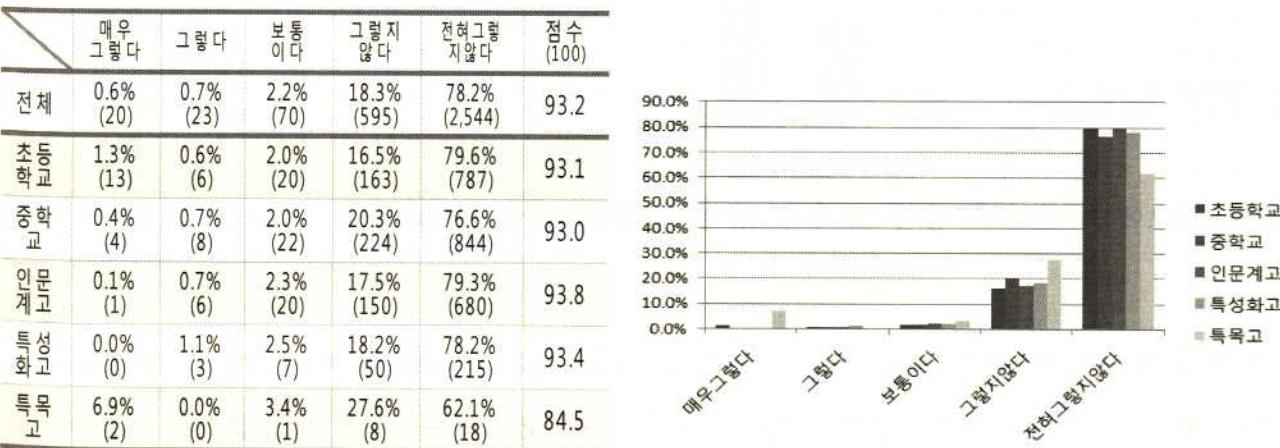
<표 II-51> 소지품 검사 여부(교사)



소지품 검사와 관련한 교사 설문 결과도 두발길이 규제 설문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성화고의 경우 다른 학교군과 달리 5.1%에 달하는 교사들이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나 일괄 소지품 검사가 존재한다고 답변하였다.

2-7) 학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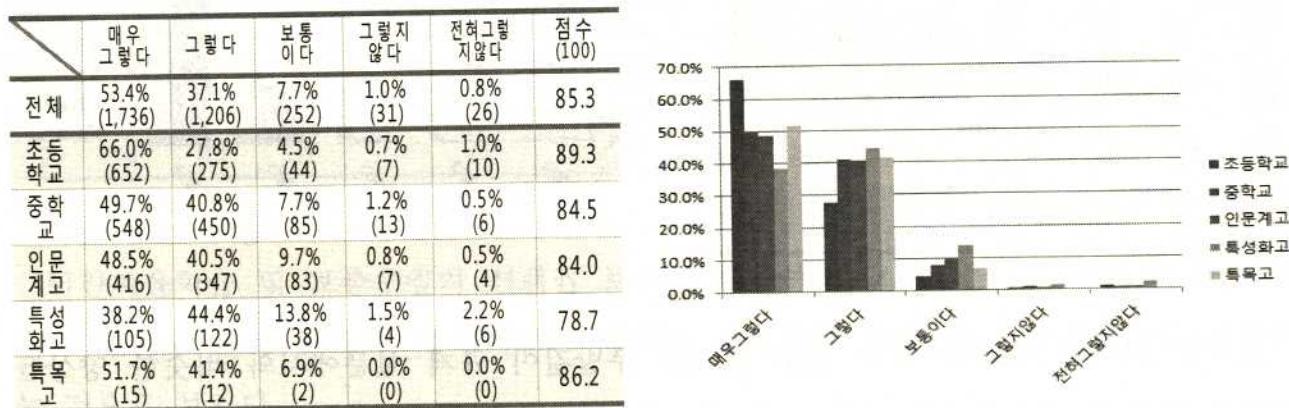
<표 II-52> 휴대전화 소지 규제 여부(교사)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특목고 교사들의 답변에서 ‘매우 그렇다’의 비중이 6.9%나 된다는 점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특목고 교사들의 표본 집단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으나 제2절의 특목고 학생들의 설문 결과와 같은 양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8) 학교는 신문 등 학생 언론활동과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 II-53> 언론활동 및 표현의 자유 보장 여부(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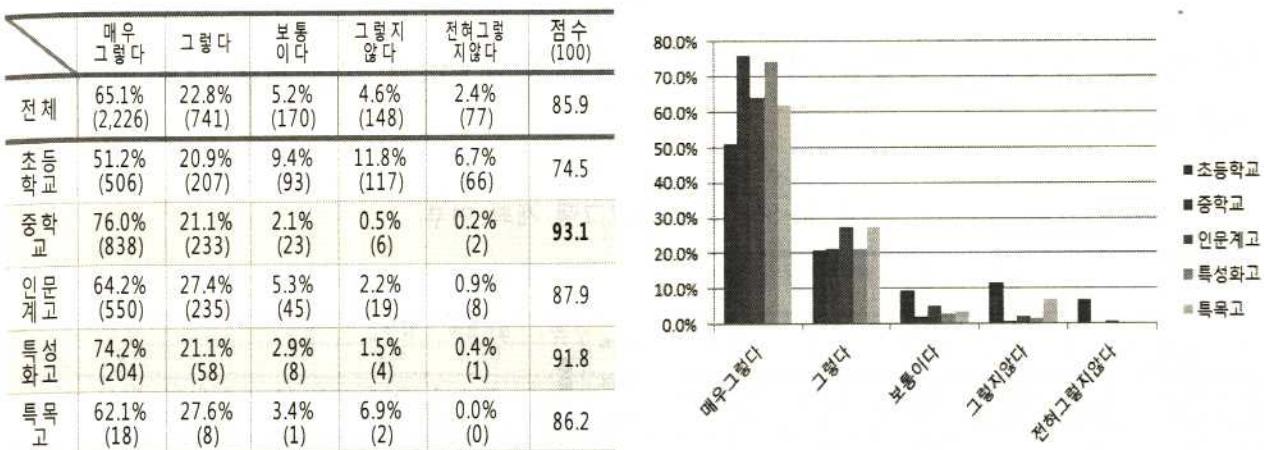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도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특성화고 교사들은 신문 등 학생 언론 활동 및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의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해 다른 학교군에 비하여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다.

3) 학생 복지 등

2-9) 학교에 상담실과 상담 교사가 있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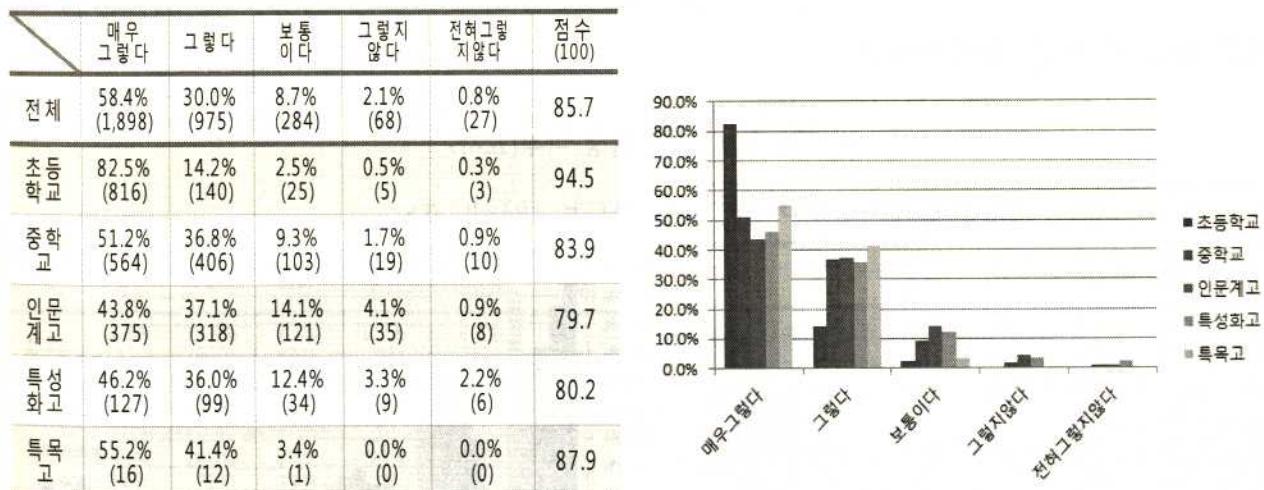
<표 II-54> 상담실 및 상담교사 여부(교사)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높은 수준의 평가를 보이는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보이는데, 각급 학교의 상황에 따른 필요성 및 전문적인 상담교사의 배치 여부 등과 관련하여 향후 정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2-10)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표 II-55> 방과 후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 여부(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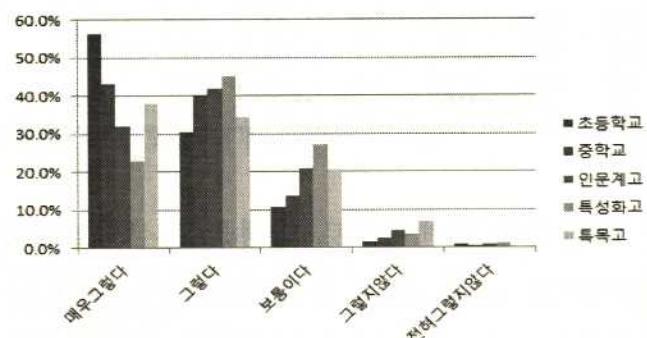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은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82.5%에 이르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상대적으로 인문계

고와 특성화고 교사들은 다른 학교군에 비해 약간 낮게 평가하고 있다.

2-11) 학교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문화 프로그램(공연, 전시, 문화교육)을 개최하고 참여를 권장한다.

<표 II-56> 문화 프로그램 개최 여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 (100)
전체	42.4% (1,380)	38.1% (1,239)	15.9% (517)	2.8% (91)	0.8% (25)	79.7
초등학교	56.2% (556)	30.5% (302)	10.8% (107)	1.6% (16)	0.8% (8)	84.9
중학교	43.2% (476)	40.3% (444)	13.6% (150)	2.4% (26)	0.5% (6)	80.8
인문계고	32.0% (274)	41.9% (359)	20.9% (179)	4.3% (37)	0.9% (8)	74.9
특성화고	22.9% (63)	45.1% (124)	27.3% (75)	3.6% (10)	1.1% (3)	71.3
특목고	37.9% (11)	34.5% (10)	20.7% (6)	6.9% (2)	0.0% (0)	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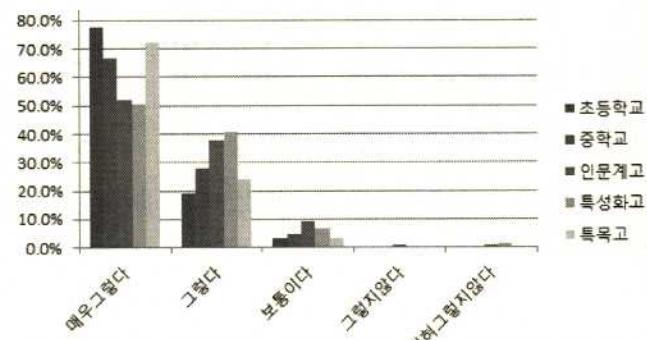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는지 등에 대하여도 초등학교 교사들의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보였으며, 인문계고와 특성화고 교사들이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2-12) 학교 급식은 위생적이다.

<표 II-57> 급식 위생 여부(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 (100)
전체	64.8% (2,107)	28.9% (940)	5.5% (179)	0.4% (14)	0.4% (12)	89.3
초등학교	77.5% (766)	19.1% (189)	3.0% (30)	0.3% (3)	0.1% (1)	93.4
중학교	66.6% (734)	28.0% (309)	4.7% (52)	0.5% (5)	0.2% (2)	90.1
인문계고	52.2% (447)	37.7% (323)	9.0% (77)	0.6% (5)	0.6% (1)	85.1
특성화고	50.5% (139)	40.7% (112)	6.9% (19)	0.4% (1)	1.5% (4)	84.6
특목고	72.4% (21)	24.1% (7)	3.4% (1)	0.0% (0)	0.0% (0)	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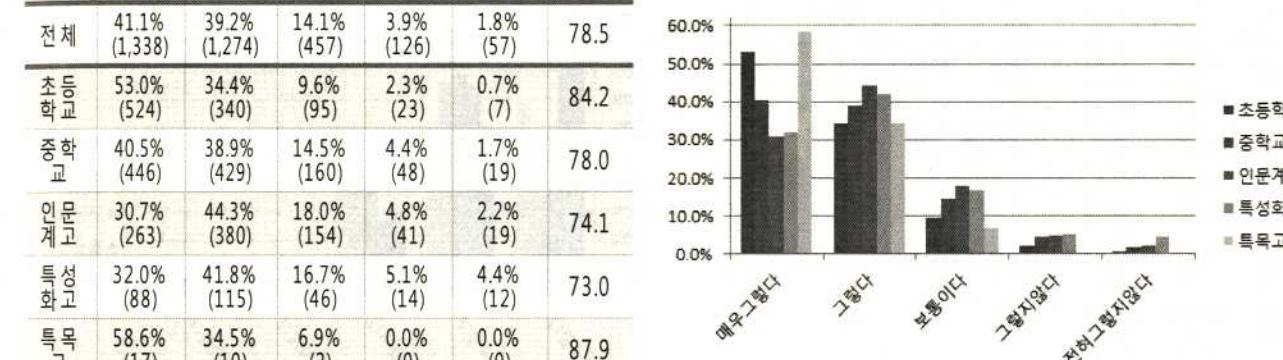


교사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학교 급식이 위생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인문계고와 특성화고 교사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약간 낮았다.

2-13) 학교는 급식 개선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표 II-58> 급식 개선 시 학생 의견 반영 여부(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 (100)
전체	41.1% (1,338)	39.2% (1,274)	14.1% (457)	3.9% (126)	1.8% (57)	78.5
초등학교	53.0% (524)	34.4% (340)	9.6% (95)	2.3% (23)	0.7% (7)	84.2
중학교	40.5% (446)	38.9% (429)	14.5% (160)	4.4% (48)	1.7% (19)	78.0
인문계고	30.7% (263)	44.3% (380)	18.0% (154)	4.8% (41)	2.2% (19)	74.1
특성화고	32.0% (88)	41.8% (115)	16.7% (46)	5.1% (14)	4.4% (12)	73.0
특목고	58.6% (17)	34.5% (10)	6.9% (2)	0.0% (0)	0.0% (0)	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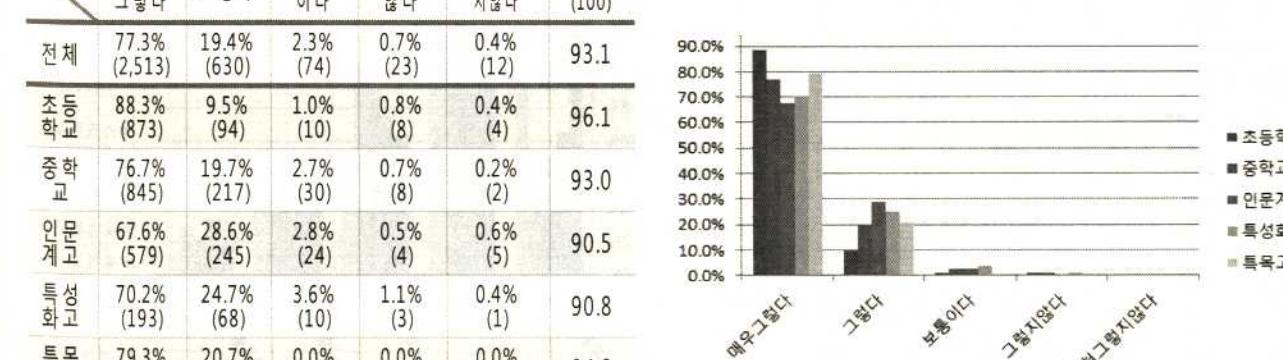


학교 급식 개선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초등학교와 특목고 교사들은 90% 안팎의 교사가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의 답변을 한 반면, 인문계고와 특성화고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평가를 하였다.

2-14) 학교에서 학생이 아플 때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다.

<표 II-59> 보건실 이용 가능 여부(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 (100)
전체	77.3% (2,513)	19.4% (630)	2.3% (74)	0.7% (23)	0.4% (12)	93.1
초등학교	88.3% (873)	9.5% (94)	1.0% (10)	0.8% (8)	0.4% (4)	96.1
중학교	76.7% (845)	19.7% (217)	2.7% (30)	0.7% (8)	0.2% (2)	93.0
인문계고	67.6% (579)	28.6% (245)	2.8% (24)	0.5% (4)	0.6% (5)	90.5
특성화고	70.2% (193)	24.7% (68)	3.6% (10)	1.1% (3)	0.4% (1)	90.8
특목고	79.3% (23)	20.7% (6)	0.0% (0)	0.0% (0)	0.0% (0)	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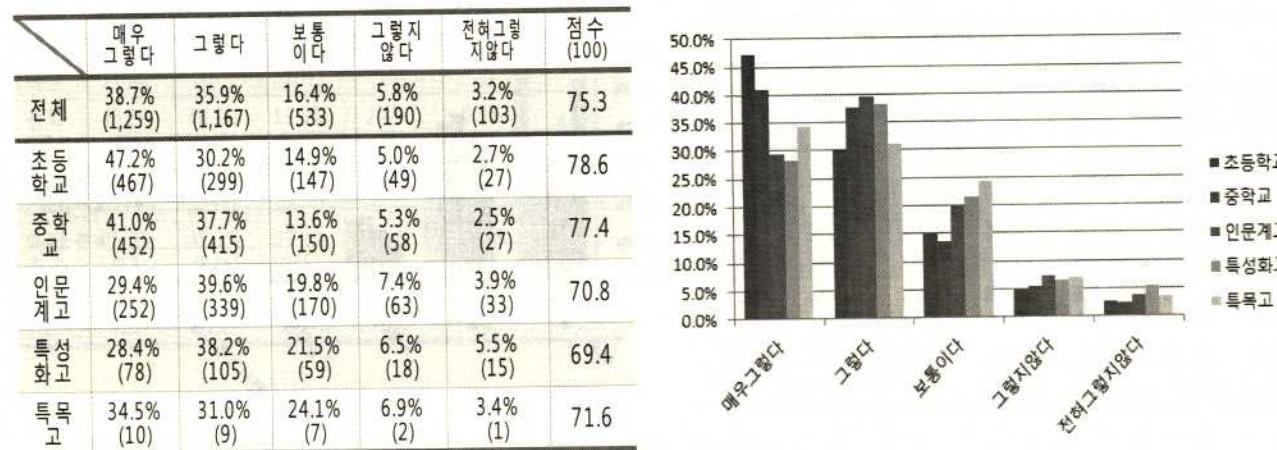


학생들의 보건실 이용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큰 문제없이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소수의 교사들이 부정적 답변을 하였는데, 향후 집단면접 조사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3. 교사참여 등과 직무피로도

3-1) 학교장이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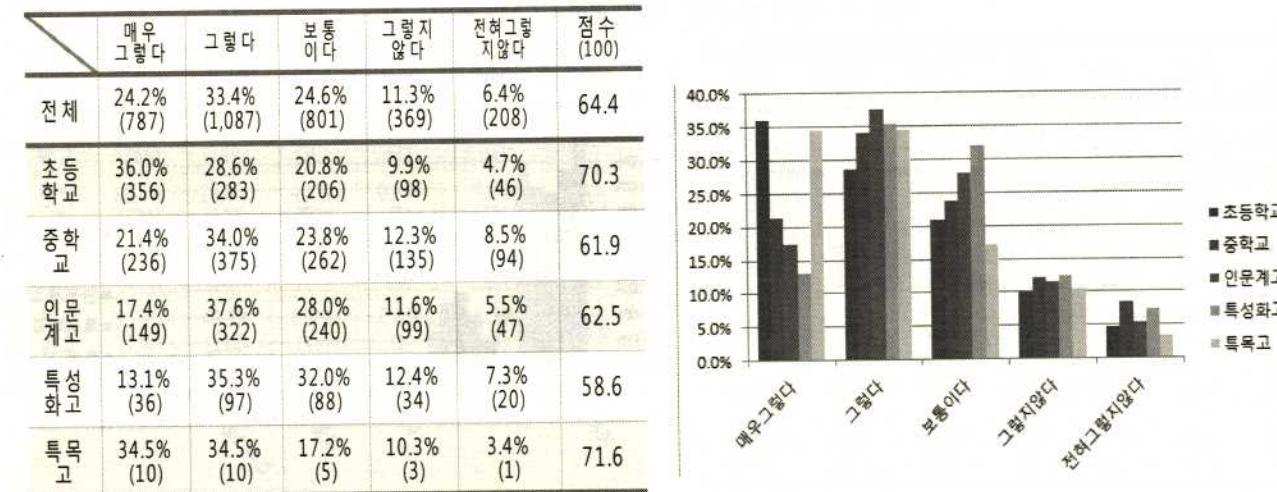
<표 II-60> 교사 의견 반영 여부



학교장의 교사 의견 청취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적으로 2/3이상의 교사들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군별로 보면 인문계고, 특성화고, 특목고 교사들의 경우에는 전체 평점보다 상당 정도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3-2) 교사가 학생인권 증진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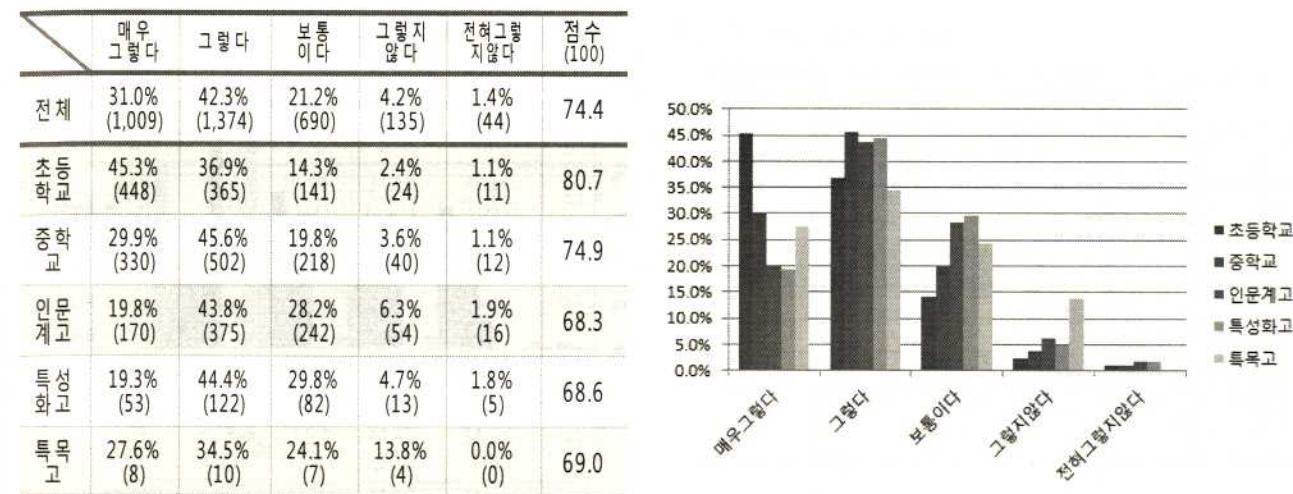
<표 II-61> 교사 주체성 존중 여부



교사가 학생인권 증진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했으며, 특히 중학교, 인문계고, 특성화고 교사들은 더욱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3-3) 학교 운영에 교사들의 참여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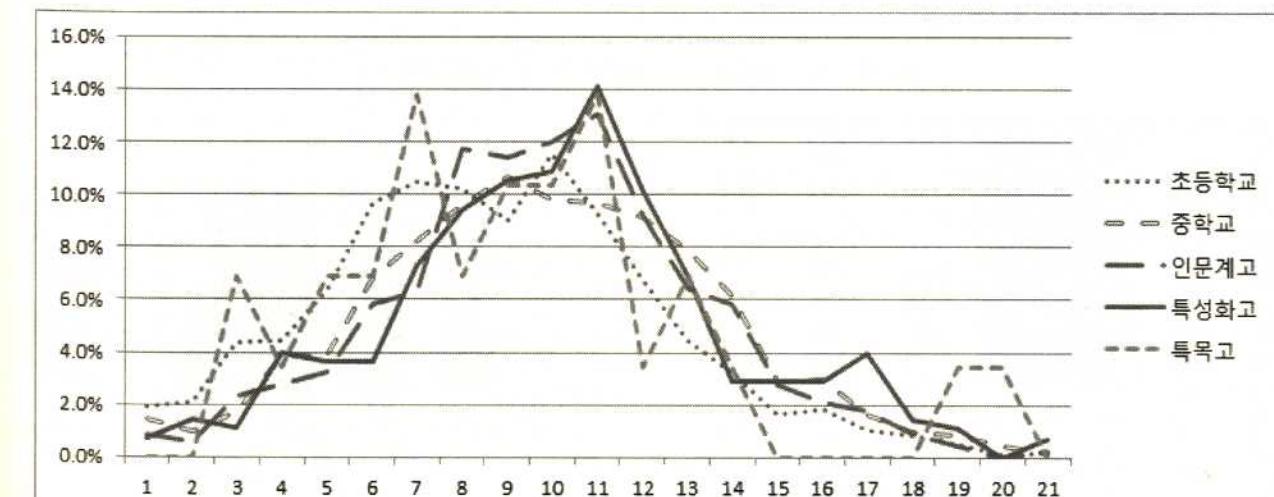
<표 II-62> 학교 운영 교사 참여 여부



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교사 참여도에 대한 설문에 교사들은 교장의 교사 의견청취 설문과 비슷한 양상의 답변을 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인문계고, 특성화고, 특목고의 교사들은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다.

3-4) 교사의 직무피로도(MBI 직무피로도) 조사

<표 II-63> 교사 직무피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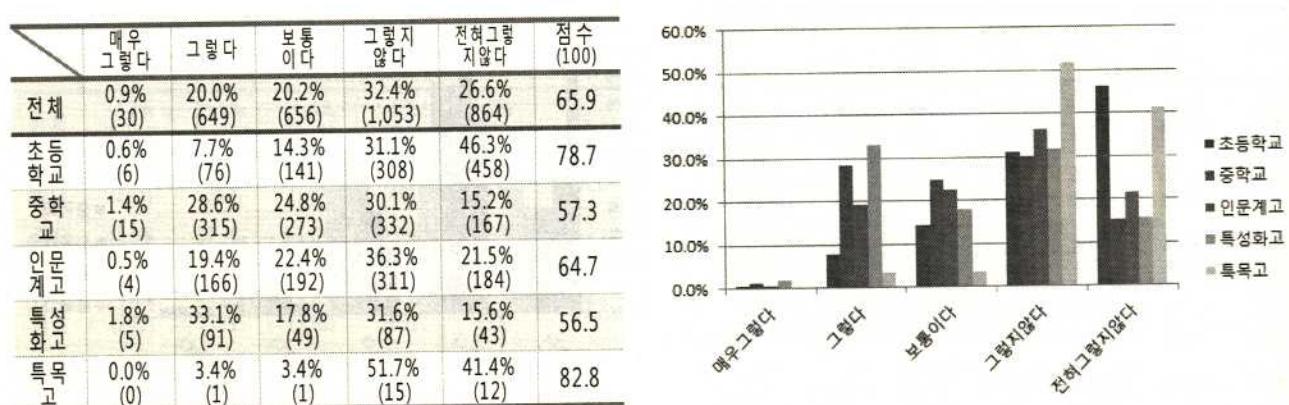


교사의 직무피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특목고, 인문계고와 중학교, 특성화고 교사의 순으로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4. 학교폭력 등

4-1)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학생 간(선후배 포함) 신체적 폭력이 일어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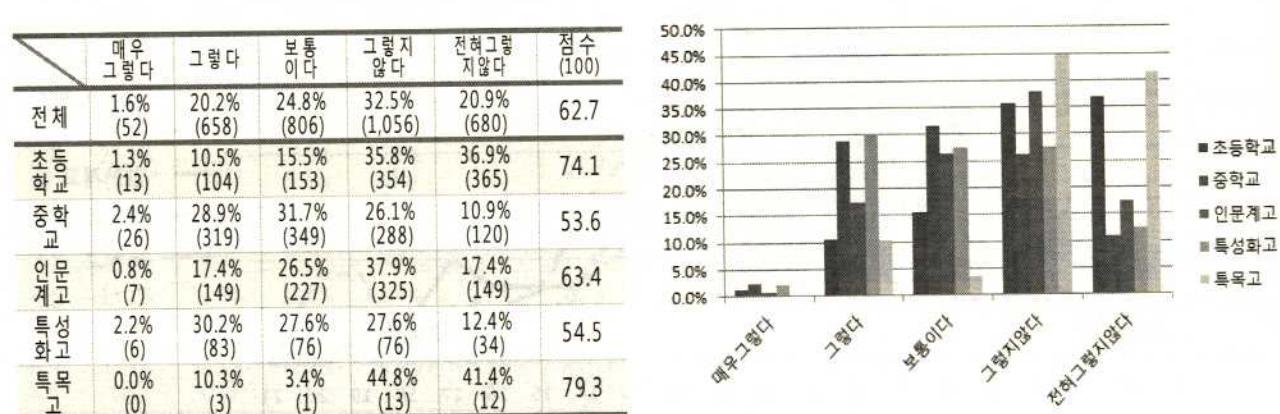
<표 II-64> 학생간 신체적 폭력 발생 여부(교사)



학생 간 신체적 폭력 사건 목격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와 특목고 교사들의 경우 폭력이 있다는 답변이 비교적 적은 반면 중학교와 특성화고의 경우 30% 안팎의 교사들이 학생 간 폭력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인문계고에서도 20% 정도의 교사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4-2)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학생간(선후배 포함) 언어폭력(심한 욕설, 비방 등)이나 따돌림이 일어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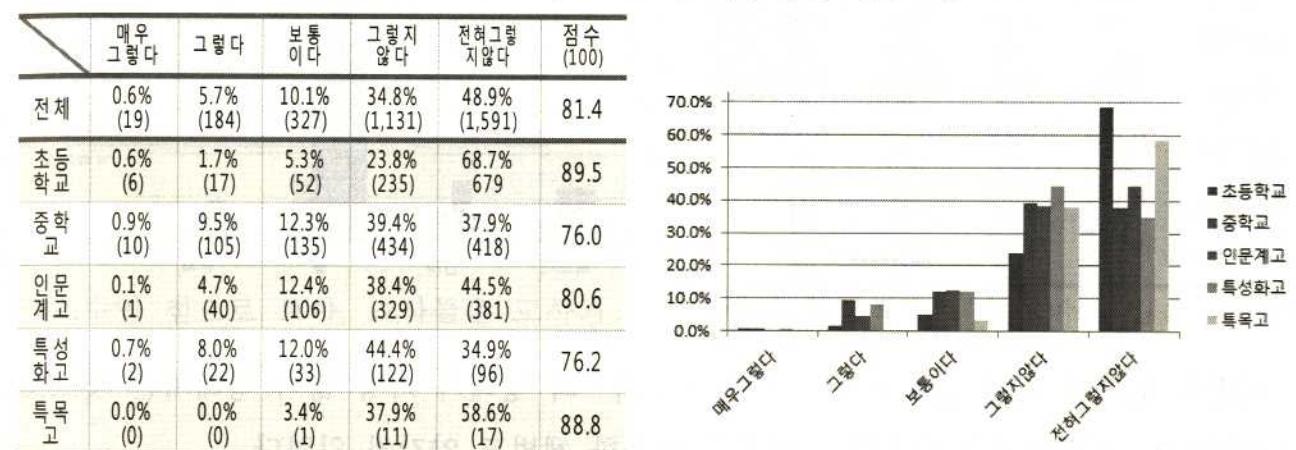
<표 II-65> 학생간 언어폭력 발생 여부(교사)



학생 간 언어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설문에 대한 교사들의 답변 결과도 위의 학생간 폭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특성화고와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경우가 있다는 답변이 30%를 넘고 있어 다른 학교군의 교사들의 답변과 차별성이 있다.

4-3)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기합 등 학생간(선후배 포함) 폭력이 일어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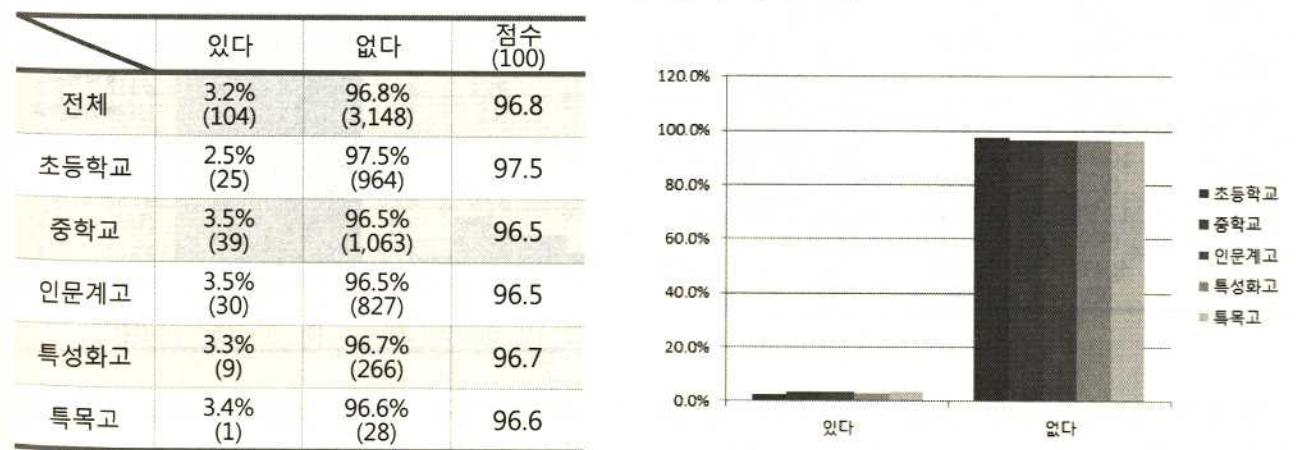
<표 II-66> 학생간 기합 등 폭력 발생 여부(교사)



이 설문 결과 역시 위의 두 설문과 마찬가지로 중학교와 특성화고의 교사들에게서 이러한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4-4) 선생님의 학교는 체벌이 있습니까? (중복 답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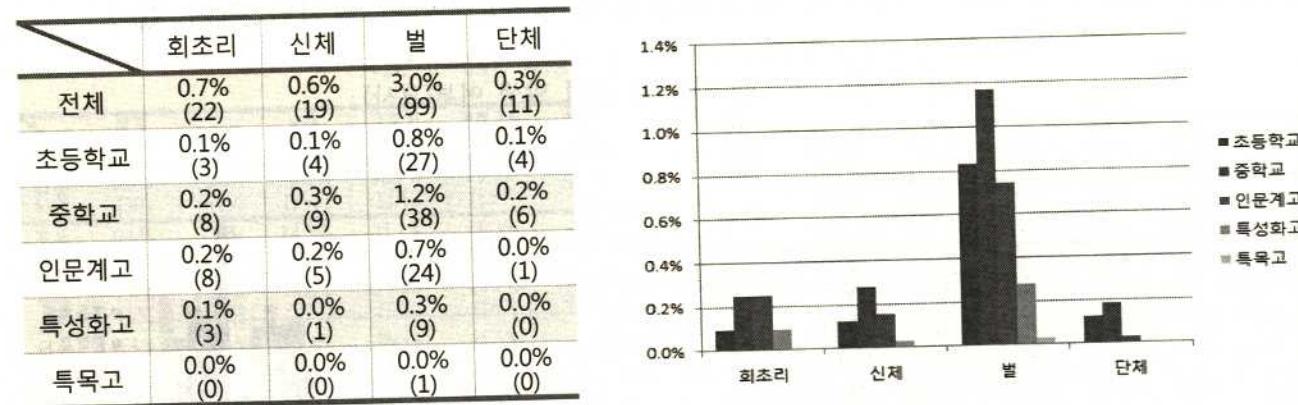
<표 II-67> 체벌 존재 여부(교사)



교사의 체벌에 대한 설문 결과, 교사들은 대부분 체벌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더 체벌이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4-1) 있다면, 체벌의 형태는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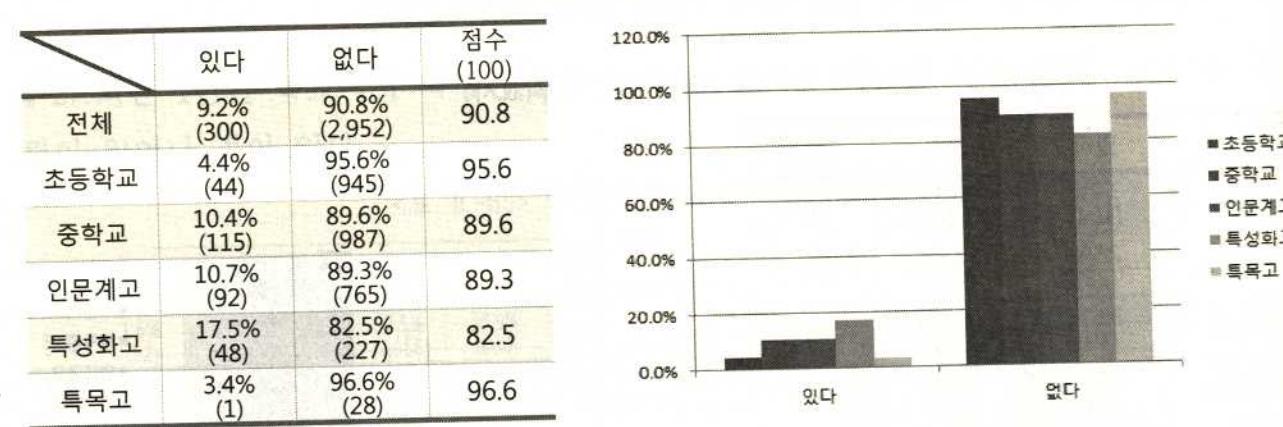
<표 II-68> 체벌 유형(교사)



체벌의 형태에 대한 설문에서는 ‘별 세우기’의 형태가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미하지만 회초리나 신체를 이용한 체벌도 약간씩 있었다.

4-5) 동료 선생님이 언어폭력(심한 욕설, 비하적 표현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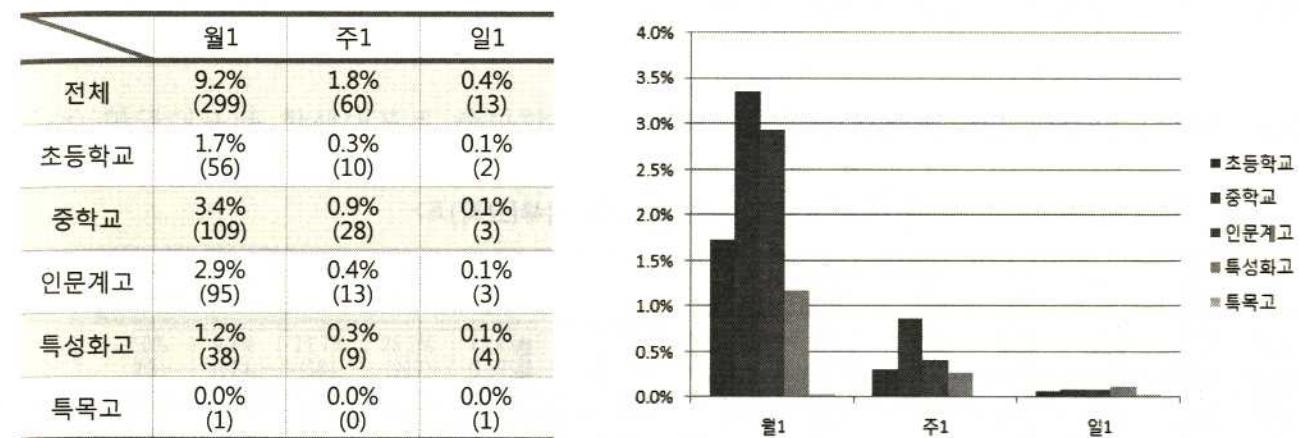
<표 II-69> 교사간 언어폭력 존재 여부



교사의 언어폭력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체벌보다는 약간 낮은 평가를 했는데, 특히 초등학교와 특목고 교사들은 체벌과 같은 수준의 평가를 하였다.

4-5-1)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합니까?

<표 II-70> 교사간 언어폭력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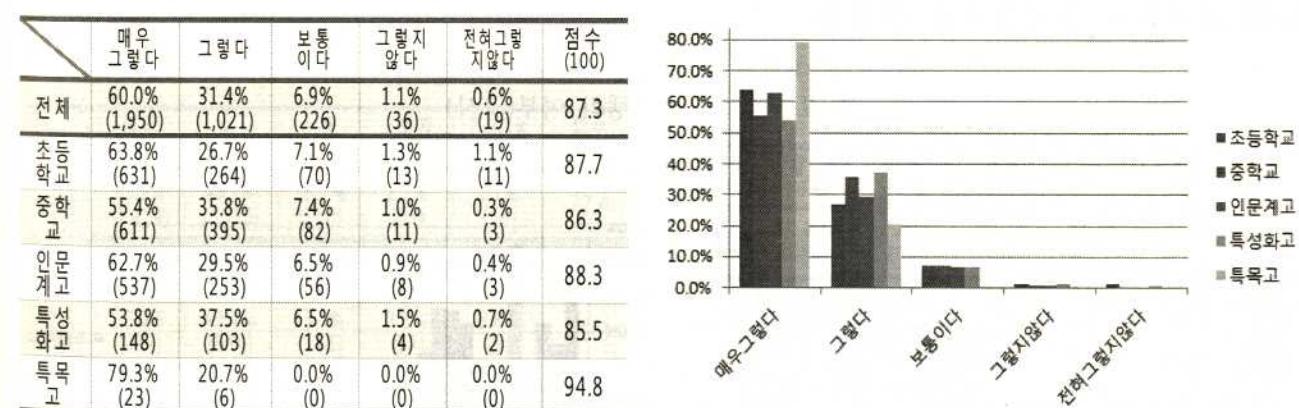


언어폭력의 빈도에 대하여는 월 1회 정도라는 답변이 가장 많고 일 1회라는 답변은 극소수인 점으로 보아, 교사들은 교사의 언어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 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학생자치

5-1) 학교는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표 II-71> 학생 자치활동 장려 여부(교사)



교사들은 대체로 학교가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목고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